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여객선 독도드림 운항관리규정 심사 결과 알림

1.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825(2026. 2. 9.) 관련입니다.
2. 독도크루즈(주) 여객선 독도드림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요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붙임과 같이 심사증명서를 교부하니, 선사는 운항관리규정 준수 등 여객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포항운항관리센터는 동 선박의 운항관리규정이 원만히 이행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심사증명서 1부. 끝.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수신자 독도크루즈(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포항운항관리센터

해사안전감독관	김영민	과장	전길	2026. 2. 13.	
			김태훈		
협조자					
시행	선원해사안전과-998	(2026. 2. 13.)	접수		
우	3771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 http://pohang.mof.go.kr
전화번호	054-245-1671	팩스번호	054-242-1326	/ youngm1225@korea.kr	/ 비공개(5,7)

제 2026-2 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

선 명 : 독도드림

선박번호 : PHR-156209

항 로 : 울릉 ~ 독도

사업자명 : 독도크루즈(주)

사업자 주소 :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울릉순환로 2411

위 선박은 운항관리규정의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2월 1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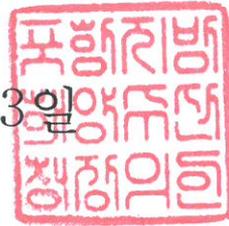


여객선 독도드림

운항관리규정

(내항여객운송사업)

2026년 02월 13일



독도크루즈(주)

여객선 독도드림

운항관리규정

(내항여객운송사업)

2026년 02월 13일



독도크루즈 (주)





목 차



제1장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1-1
제2조(용어의 정의)	1-1
제2장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제3조(안전관리 목표)	2-1
제4조(안전관리 방침)	2-1
제5조(안전관리 방침 등의 이행·유지 및 확인)	2-1
제6조(임직원 및 선원의 책임과 의무)	2-1
제3장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	
제7조(최고경영자의 책임)	3-1
제8조(안전관리조직)	3-1
제4장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과 임무 등	
제9조(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4-1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4-1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계)	4-2
제12조(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	4-3
제5장 선장의 책임과 권한 등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5-1
제14조(선장에 대한 적성검사)	5-1
제6장 인력의 배치와 운용	
제15조(채용·배승관리)	6-1
제16조(인수인계)	6-1
제7장 여객선운용계획의 수립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등)	7-1
제18조(항해업무)	7-1
제18조의2(야간항해)	7-6
제19조(입항·출항 시 업무)	7-7
제20조(통신업무)	7-8
제21조(여객업무)	7-8

제22조(여객준수 사항의 전달)	7-10
제23조(화물관리)	7-11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7-11
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	7-11
제26조(정박 및 계류)	7-12
제27조(선내 작업안전 관리)	7-12

제8장 비상상황 대응

제28조(사고처리 시 준수사항)	8-1
제28조의2(준해양사고의 통보)	8-1
제29조(비상대응)	8-1
제30조(피해보상 등의 조치)	8-4
제31조(안전교육 및 훈련 등)	8-4

제9장 선박의 점검정비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9-1
제33조(육상설비 점검)	9-1
제34조(선내 정비 및 점검 등)	9-1
제35조(유류관리)	9-2
제36조(부속선의 점검 및 정비)	9-3

제10장 자료관리

제37조(문서관리)	10-1
제38조(문서생산 등)	10-1
제39조(문서관리대장)	10-2
제40조(문서의 폐기)	10-2
제41조(해도관리)	10-2
제42조(여객선 이력장부관리)	10-2
제42조의2(여객선 안전정보공개)	10-3

제11장 운항관리규정의 확인, 검토 및 평가 등

제43조(운항관리규정 내부심사)	11-1
제44조(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11-1
제45조(운항관리규정의 비치 등)	11-1
제46조(규정의 적용)	11-2

【참고자료】

○ [붙임1] ~ [붙임17]	
------------------------	--

제1장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항업무의 책임 및 업무수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항관리자”란 「해운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여객선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해사안전감독관”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라 해사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란 「해운법」 제21조의5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수립·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사업자가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4.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5. “직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선원법시행령 제3조의 해원을 말한다.
6. “부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선장 및 직원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7. “육상작업원”이란 육상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정리, 유도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선내작업원”이란 선박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정리, 유도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9. “항해계획”이란 기점·종점, 기항지, 항행경로, 항해속력, 운항횟수, 출항시간, 계절 운항시간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운항기준도”란 항로(기종점, 기항지, 침로, 변침점, 항해장애물 등), 표준운항시각, 항해속력,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구간, 기타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선박의 항로도를 말한다.
11.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에서 정한 위험물 및 승객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건과 총포, 도검류 등을 말한다.
12. “항로도”란 항로의 출발지·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해도 등을 말한다.
13. “운항관리센터”란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설치한 지역사무소를 말한다.

제2장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제3조(안전관리 목표) 회사는 관리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근무규정 준수
2. 선박의 안전운항
3. 자연환경보호
4. 고객 안전편의 증진
5. 안전제일 작업 환경
6. 자원절약 경제 운항

제4조(안전관리 방침) 회사는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방침을 수립·시행한다.

1. 안전운항 및 환경보호와 관련한 법규 준수
2. 비상대응훈련의 생활화
3. 부적합사항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
4. 신속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5. 근무자 근무규정 준수 철저
6. 고객 친절 및 편의시설 서비스 강화

제5조(안전관리 방침 등의 이행·유지 및 확인) ① 회사는 인명과 선박의 안전 및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 및 선원이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을 이행·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내부 심사 등을 통하여 목표와 방침에 대한 이행·유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제6조(임직원 및 선원의 책임과 의무) 모든 임직원 및 선원은 회사의 운항관리규정이 항상 양질의 수준으로 운영·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운항관리규정의 숙지 및 준수
2. 여객선 안전의 우선적 확보를 위한 무리한 운항 지양
3.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자격·경력을 갖춘 선원(예비원 포함)의 채용
4. 과승 예방을 위한 승선인원 집계표 확인 실시
5.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원의 적절한 교육·훈련 실시
6. 위험물 적재·운송 방법 숙지 및 관계 법령 준수
7.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8. 기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계 법령의 준수

제3장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

제7조(최고경영자의 책임) 최고경영자는 회사가 소유·관리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육·해상 직원의 책임, 권한,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수행을 위한 물적·인적자원(안전운항을 위한 최신정보 포함)을 제공한다.

제8조(안전관리조직) ① 회사는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조직을 두며, 주된 사업소의 관할구역과 안전관리의 책임 범위를 정한다.

② 주된 사업소 현황 및 안전관리책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사

가. 기본사항

상 호	소 재 지	연락처 (팩스)
독도크루즈(주) (본사)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울릉순환로 2411	T. 054-791-8991 F. 054-791-0800

2. 포항지점(주된 사업소)

가. 기본사항

상 호	소 재 지	연락처 (팩스)
독도크루즈(주) 포항지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285-2 영일만여객터미널	T. 070-4401-7006 F. 054-242-5005

나. 관할구역

- 항로: 울릉(사동)항 ~ 독도

다. 안전관리책임의 범위

- 울릉-독도 항로 전반에 관하여 선장과 협력하고 안전운항확보
- 육상직원 및 해상직원 채용 및 교육에 관한 업무
- 선원의 배승 및 휴가에 관한 업무
- 선박의 정비계획 수리 집행 및 선박검사 수검에 관한 업무

- 관계기관 등의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결과보고에 관한 업무
- 선장 및 기관장이 보고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3. 울릉(영업소)

가. 기본사항

상 호	소 재 지	연락처 (팩스)
독도크루즈(주) 울릉영업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울릉(사동)항 여객선터미널	T. 070-4905-6008 F. 054-791-0800

나. 관할구역

- 항로: 울릉(사동)항 ~ 독도

다. 안전관리책임의 범위

- 승선권의 판매와 개찰 및 여객의 승선과 하선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사동항 접안 중 안전관리 및 터미널 내 승강대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독도 이·접안(독도 선회 포함) 및 승객 승·하선 등 독도 접안 중 안전관리
- 안전관리업무 지도·감독 및 안전운항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제공

③ 안전관리조직도는 [붙임17]과 같으며,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선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및 해당 부서장간에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4장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과 임무 등

제9조(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① 회사는 「해운법」 제21조의5에 따른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 중 1인은 수석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하며,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여객선 운항과 관련한 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④ 회사는 안전관리책임자의 해임 및 퇴직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자격이 있는 자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하고, 향후 선임 및 채용 계획 등 관련 내용을 지방해양수산청과 운항관리센터에 알려야 하며 빠른 시일 내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회사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변경 시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과 운항관리센터에 문서로 통보하고, 해운법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①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운항관리규정 운영의 총괄 책임자로서 선장의 직무와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여객선의 운항 및 기타 수송의 안전 확보에 대한 업무 총괄
2. 운항관리규정 수립 및 지속적인 개선·시행
3. 선박의 운항 전반에 관하여 선장과 협력하여 여객수송의 안전 확보
4. 선장과 협력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관리규정 및 기타 비상대응체제 이행 유지
5.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과 관련하여 육상직원 및 육상작업원을 지휘, 선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실시

6. 위험물 취급과 관련하여 제반 규정을 준수하도록 선원 지도·감독
7. 여객선의 정비계획에 따른 이행상태 확인, 관련 증서의 관리 및 유지에 대해 감독
8. 선장 및 기관장이 보고한 시설 결함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9. 여객의 승·하선시설 및 부잔교(육상시설 포함) 등에 대해 정기적 점검 실시, 필요한 경우 자체정비 또는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 적절한 조치 시행
10. 여객선 접·이안 및 여객 승·하선 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11.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및 기타 관계기관의 직원이 선박 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점검에 입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및 최고경영자에게 문서로 보고
12. 관계법령의 개정, 사내조직 또는 선박의 변경, 항로의 신설 또는 폐지 등 당해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선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신청
13. 운항관리규정 관련 문서 관리
14. 여객선 안전 관리를 위해 수시로 여객선에 승선하여 본선 실태를 점검
15. 여객선사 내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활동 이행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계)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포항지점에 근무해야 한다. 여객선이 운항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포항지점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여객선과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회사는 안전관리책임자가 10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업무대행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방해양수산청과 운항관리센터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10일에 1회 이상 울릉 영업소에 방문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2조(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 ① 여객담당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객의 승·하선에 관한 업무 총괄
2. 터미널 승선권 발급 및 승선절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책임자와의 업무 협의 및 안전조치
3. 여객 승·하선시설 등에 대한 관리 업무 총괄
4.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 보관·관리
5. 여객대피시설 등 여객선 내 여객시설에 대한 관리

② 해무담당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원의 채용·배승·휴가에 관한 사항
2. 선원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3. 신규채용 선원 직무교육
4. 제반증서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④ 공무담당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박의 수리, 선용품 및 기부속 공급
2. 안전설비 보급 및 관리
3. 선박의 정비계획과 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확인

제5장 선장의 책임과 권한 등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전운항, 여객보호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을 시행하고 「선원법」 등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선장은 필요한 경우 선장복무방침을 수립하여 선원이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③ 선장은 인명, 여객선 및 환경보호를 위한 대응조치에 최우선적인 결정권한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회사에 물적·인적 지원 요청 권한을 갖는다.

④ 선장은 선박의 통상업무 중 여객관리는 항해사 또는 여객안전관리선원, 정비관리는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선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제5항에 따라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본선 선원이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① 선장은 「선원법」에서 정하는 적성심사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인력의 배치와 운용

제15조(채용·승진·배승 관리) ① 회사는 해당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선원의 채용·승진 및 배승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특히 선장·기관장의 채용·승진 시에는 승무경력, 면담 등을 통하여 지휘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② 회사는 선원 채용·승진에 있어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한다.

③ 회사 및 선장은 선원과 선박 관련증서 및 선원 교육훈련증서를 관리해야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 선원의 승선, 항해시간별 적정 인원배치 및 승선선원의 자격유지를 검증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해야 한다.

제16조(인수인계) ① 선장 및 기관장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외의 선원은 구두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다.

② 선장의 인수인계서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선장 이외 선원의 인수인계서는 선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선장 및 기관장의 예기치 않은 일방적인 퇴사 등으로 인수인계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차하위자가 대행한다.

③ 선장 및 기관장의 인수인계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상 업무 및 비상상황에 있어서 선원의 임무와 책임
2. 선원의 임무와 책임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외부·내부요인
3. 선원의 임무와 책임과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하였던 사고경력 및 대처요령
4. 선원의 임무와 책임과 관련한 문서 관리

④ 필요시 선원은 후임자의 여객선 적응 및 관련 교육을 위해 동승할

수 있다.

⑤ 선장 또는 기관장의 업무대행을 위해 예비 선장 또는 예비 기관장으로 교체 시에는 다음 주요 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 항해·기관·구명·소방 및 통신설비 작동 실태 및 결함 등 참고사항
2. 연료유 및 윤활유 잔량, 수급계획 또는 수급일정 등
3. 여객실 및 여객 편의시설 관리 상태 또는 정비 계획
4. 관계기관 수발신 공문철 및 주요 선박 증서
5. 기타 주요 업무 등

제7장 여객선 운용계획의 수립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등) ① 여객선 **독도드림**의 제원 및 운항 구역은 다음과 같다.

선종	진수일자	총톤수	기관출력
고속여객선	2013.10.09	364톤	2,240 kW x 2Set
선박치수(m)	최대속력	항로	항해구역
38.91×10.40×3.80	35노트	울릉(사동)－독도	연해(국내항해)

② 여객선 **독도드림**의 승선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최대승선인원 : 450명(여객:444명, 선원:6명)
2. 승무정원 : 증서상 정원 5명

가. 증회 운항시에는 선박직원법에 따라 적절히 증원해야 함

나. 비상배치표는 6명 승선기준으로 작성 및 운용함을 원칙으로 함

제18조(항해업무)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예정항로 기상, 본선의 감항성 등을 종합하여 최적항로를 선정한다.

② 선장 및 기관장 또는 선장 및 기관장이 지정한 자는 운항 중에 매 시간당 1회 이상 및 일일 운항 종료 시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에 기록·유지해야 한다.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에 기록·유지해야 한다.

1. 비상 탈출경로 등 특수설비
2. 화재예방
3. 수밀문 등 수밀설비 이상 유무
4. 여객 안전 확보 상태

5. 기관 작동상태 등

③ 선장 및 항해사는 시계제한, 악천후, 협수로 통항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항해에 철저히 임해야 하며, 안전운항을 위해 감속운항을 해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입항·출항 시 및 항계 내에서 운항할 경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지방해양수산청고시에서 정한 속력 준수)

2. 시계 불량 시 협수로, 사고다발 해역을 통과할 경우

3. 운항 중 돌풍 등 해상기상이 악화되어 감속운항이 필요한 경우

④ 선장은 승무정원에 따라 항해 중 적절한 선교당직 및 기관당직 인원을 배정한 항해 당직표를 작성하고 이를 선내 게시해야 한다.

⑤ 항해안전 확보에 필요한 운항기준을 표시한 항로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항항로는 다음과 같다.

항로	출발지 (기점)	종착지 (종점)	항해 속력	항해 거리 (mile)	운항 시간
울릉(사동)-독도	울릉(사동)	독도	32 노트	49	1시간 45분
독도-울릉(사동)	독도	울릉(사동)	32 노트	49	1시간 45분

2. 기점·종점의 위치와 그 상호간의 거리

기점(위치)	종점 또는 기항지(위치)	거리(mile)	비고
울릉 사동항 37-27.7N, 130-52.7E	독도 37-14.3N, 131-52.0E	49	

3. 항로상의 위험구역

가. 암초 및 저수심

37-14.4N, 131-52.0E 동도-서도 사이 : 1.5M

37-14.3N, 131-52.0E 동도 방파제부근 : 2.3M

나. 독도 선회 시 0.1마일 이내

다. 자격 및 훈련구역

3) 해양경찰 훈련구역

사격장 명	구역(좌표WGS-84)	발표일 사용고도
R-141 동해 울릉도 동방 근해	아래 4개 지점 선내해면 37-40-05.0N, 131-12-00.0E 37-40-05.0N, 131-25-00.0E 37-30-05.0N, 131-25-00.0E 37-30-05.0N, 131-12-00.0E	300 FT 이하

라. 어선조업·어장 밀집 구간 : 없음

마. 교통 밀집 구간 : 사동항 입·출항 시

바. 통항분리수역, 특정해역 : 없음

사. 기타 항해에 장애가 있는 지점 : 없음

4. 선장이 위치보고를 해야 하는 지점

가. 울릉 출항 시

연번	보고지점	위도, 경도 (추측위치)	거리(mile)	보고처
1	출항보고	울릉 출항 후 10분 이내	-	운항관리센터 (VHF ch 71)
2	I지점 통과	37-22-55.0 N 131-20-00.0 E	23	
3	입항보고	독도 입항 10분 전 또는 입항완료 직후	25	

나. 독도 출항 시

연번	보고지점	위도, 경도 (추측위치)	거리(mile)	보고처
1	출항보고	독도 출항 후 10분 이내	-	운항관리센터 (VHF ch 71)
2	I지점 통과	37-22-50.0 N 131-20-00.0 E	25	
3	입항보고	울릉 입항 10분 전 또는 입항완료 직후	23	

5. 「선원법」 제9조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구간

구 간	비 고
가. 항구를 출입할 때	1. 37-27.92N, 130-53.68E 2. 37-14.00N, 131-51.80E
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다. 선박의 충돌·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라.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안개, 강설(降雪) 또는 폭풍우 등으로 시계(視界)가 현저히 제한되어 선박의 충돌 또는 좌초의 우려가 있는 때 2) 조류(潮流), 해류 또는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선박의 침로(針路) 유지가 어려운 때 3) 선박이 항해 중 어선군(漁船群)을 만나거나 운항중인 항로의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는 때 4)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설비 등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선박 운항이 곤란하게 된 때	

6. 제18조 제 3항 각 호의 사유로 안전운항을 위하여 감독운항을 하여야 할 경우

7. 태풍 내습 시 또는 기상악화 시 선박의 피항지

- 가. 태풍내습 시 :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안전한 장소를 피항지로 선정
- 나. 기상악화 시 :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안전한 장소를 피항지로 선정

8. 정기적으로 교행(交行)하는 다른 선박현황

선명	항로	선속 (knots)	정원	본선과 예정되는 교행 정보		비고
				교행시간	교행위치	
씨스타 11호	울릉(도동)-독도	35	449	09시00분경 16시00분경	37-14.0N 131-51.8E 37-16.5N 131-39.5E	선사별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썬라이즈	울릉(저동)-독도	38	442	09시30분경 16시30분경	37-17.3N 131-35.5E 37-14.0N 131-51.8E	

※ 선장은 본선과 정기적으로 교행하는 다른 선박의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안전운항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항로도에 관한 사항

가. 운항항로에 대한 항로 등이 표시된 해도를 보유해야 한다.(「선박설비기준」 제93조에 따라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나. 해도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다. 해도를 최신본으로 유지해야 한다.

⑥ 출항이나 운항을 정지해야 하는 해상 등의 조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제원, 운항구역, 기상조건, 복원성 등을 감안하여 출항 및 운항을 정지해야 함

2. 기상조건에 따른 출항·운항정지 기준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와 관련한 별표 10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항로의 해상상태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정지해야 함

풍 속	파 고	가시거리
평균풍속 13m/sec 이상	최대파고 3.0m 이상	1km 이내
※ 상기 운항 정지 기준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10 “선박 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 를 기준으로 작성함		

가. 울릉 출항 시에는 기상청 울릉부이 및 독도부이를 기준으로 함
 나. 다만, 부이 고장 시에는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3. 선장은 돌풍 등으로 실제 당해 항로의 기상상태가 여객선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항을 중지하거나 회항, 피항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운항관리센터로 즉시 보고해야 함

4. 여객선이 운항 중 짙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악화된 경우(시정 1km 이내)에는 안전한 곳에 임시정박해야 하며, 임시정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경계원 배치, 감속(안전속력 유지), 항해등 점등, 무중신호 취명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운항해야 함

5. 운항관리자가 안전운항에 저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운항중지를 요구한 때에는 운항을 중지해야 함

6. 선박검사 증서상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 따라야 함

제18조의2(야간항해) ① 사업자는 야간운항(일몰 30분후부터 일출 30분전 까지를 말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조건을 준수 하고, 야간운항장비, 항로 여건 및 기항지의 조명시설 등을 고려하여 여객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② 회사 및 선장은 운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어장, 교각 등 항로상 장애물 식별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2. 기항지 접안시설과 선박에 설치된 야간조명설비의 상태

③ 선장 및 항해사는 야간운항 동안 선교 내 2인 이상의 항해당직체제를 유지하고, 육안 및 레이더 등을 통해 타선박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제19조(입항·출항 시 업무) ① 선장은 출항 전 승선해야 하는 선원의 승선 여부를 확인한다.

② 선장은 출항 전 승선정원의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③ 선장은 출항 시 임시승선자를 포함한 본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수를 최종 확인하여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한다.

④ 선장은 「선원법」 제7조에 따라 출항 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한다.

1.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2.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3. 항로 및 항해계획의 적정성
4.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기상 및 해상 정보
5. 비상배치표 및 비상시에 조치해야 할 해원의 임무 숙지상태
6. 그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운항관리자와 합동으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그 보고서를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⑥ 선장은 합동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해야 하며, 조치를 요청받은 안전관리책임자(선박소유자 포함)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선장은 입항 전 계류시설에 선박을 접안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안전관리책임자나 영업소나 운항관리자 등에 확인해야 한다.

⑧ 선장 및 기관장은 입항 전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유지해야 한다.

1. 조타장치
2. 항해장비
3. 기관기기 운전 상태
4. 현문 등 이상 유무
5. 갑판기기

제20조(통신업무) ① 선장은 운항관리센터와 교신상태를 유지하고, 출·입항 시 및 운항관리규정에 표시된 위치보고장소 통과 시 운항관리센터에 출·입항 사실 및 이상 유무를 보고해야 한다.

② 선장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별표2]에 따른 보고사항을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③ 선장은 「선원법」 제14조에 따라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물건 등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 때에는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선장은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용가능한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해양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구조기관 등에 보고해야 한다.

제21조(여객업무) ① 회사는 매표담당자로 하여금 승선권 발행 시 여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권을 발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출항 10분 전까지 발권을 마감해야 한다. 다만, 섬 지역의 여객 등을 고려하여 마감 시한 이후에 발권하는 경우 출항 전 점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승선 인원을 관리해야 한다.

② 여객의 승선 시에는 담당직원을 승강대 입구에 배치하여 여객 신분증 및 승선권을 확인 후 승선하도록 한다.

③ 여객의 승·하선은 승강대를 통하여야 하며, 선장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승강대를 점검하고 여객이 승·하선하도록 해야 한다.

④ 여객의 승·하선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안전조치 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⑤ 여객의 승·하선 시에는 본선 선원 및 선사 육상직원 입회하에 안전하고 질서 있게 승·하선하도록 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⑥ 선장은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지 않으며, 승선인원은 선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하여 선장에게 보고한다.

⑦ 선장은 본선 선원 중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지정하여 여객이 안전하고 질서있게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하며, 여객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⑧ 여객선이 운항중일 때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선원이 여객 및 선내 특이사항의 발생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해야 하며, 기상악화 등 운항 상황이 악화될 때에는 수시로 순찰을 하도록 한다.

⑨ 해운법 제21조의2 제5항에 따라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3개월간 보관(전산매표시스템 등을 이용한 전자적 관리를 포함한다.)해야 하며, 승선권 관리책임자는 수시로 보관장소 및 관리 상태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⑩ 선내에서 승선권 발매 시 승선권의 해당란에 승선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출항 즉시 사무실로 전송하거나 전산발권을 해야 하며, 출항시간별로 분리하여 수밀이 되는 용기에 보관 후 입항 즉시 사무실로 발송한다. 다만, 전자적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승선권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⑪ 선원은 화재, 충돌, 퇴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선장의 지휘에 따라 여객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비상탈출구 위치 및 대피 방법에 대한 안내방송 이행
2. 담당구역의 여객 대피 안내

⑫ 선장은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설치 및 확인한다.

1.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 「제한구역」, 「출입금지」, 「통제구역」, 「통행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2.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촉수 엄금」 또는 「손을 대지 마시오」 등의 표지판 설치
3. 계단입구나 출입문 높이가 낮은 객실 등에는 「머리조심」 표지판 부착
4. 선내 편의시설(자판기, 정수기 등)의 고정상태 확인
5. 항해 중 선원으로 하여금 여객구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수시로 순찰시켜야 하며, 법령 및 운송계약에서 정한 여객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선장의 지시를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6.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등 특별보호여객의 현황 및 탑승 위치 파악

제22조(여객 준수사항의 전달) ① 선장은 출항 후 빠른 시간 내에 모니터 및 선내 방송시설을 이용하거나 선원의 직접 시범 등을 통하여 여객에게 다음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기상상태
2. 출항 전 점검결과 내용
3. 구명조끼 등 사용법
4. 항행시간 및 입·출항 시 예정시간
5. 그 밖에 질서유지 등 여객안전에 관한 사항

② 여객이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 대한 출입금지
2.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금지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대한 접촉금지
3. 선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음주·가무 등의 금지
4. 선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금지

5.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적재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6.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금지
7. 선박운항관리자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8. 그 밖에 선원 등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금지

③ 선장은 여객실, 통로 등 여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1. 구명조끼 착용법
2. 비상대피도면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와 비상탈출요령
3. 구명조끼 및 소방설비 보관장소
4. 각 여객실의 정원
5.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제23조(화물관리) 해당사항 없음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① 사업자 또는 선장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따라 여객선의 복원성을 유지해야 하며 회사는 정부대행 검사기관이 승인한 복원성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선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복원성 자료를 유지·관리 하여 본선에 비치해야 하며 사업자는 그 사본 각 1부를 운항관리센터(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 위험물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해양수산부령),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해양수산부고시)에 따라 승인받은 위험물을 적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선장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해당 위험물(휴대품 포함)을 안전하게 보관
2. 위험물 기타 여객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적재 금지

3. 여객이 휴대한 위험물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붙임 6]’ 에 한하여 적재가 가능하며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사람이 수거하고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

4. 적재관리 책임자는 선장이 지정하며, 선장은 선내 적재장소를 지정하여 표시하여 보관

- 장소 : 선미 창고 - 담당 : 1등항해사

제26조(정박 및 계류) 선박의 정박(계류) 시 선장은 아래 사항을 최종 확인 후 필요시 정박당직자를 배치한다.

1. 접안 장소와 수심, 선박의 흘수, 고조와 저조의 시각과 수위
2. 계선 결속상태, 닻의 배치와 닻줄의 길이
3. 주기관의 상태 및 비상 시 사용 가능성
4. 선상에서 수행되는 작업
5. 선저폐수의 양
6. 표시되어 있는 신호 혹은 등화
7. 선박에 남아 있는 선원의 수와 재선 중인 그 밖의 자의 현황
8. 특별히 요구되는 항만규칙
9. 선장의 당직지침과 특별 지시사항
10. 비상상황 발생 시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항만당국을 포함한 선박과 육상의 이용 가능한 통신방법, 상륙자 비상소집 방법
11. 기상상태
12.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해 중요한 기타 사항

제27조(선내 작업안전 관리) ① 선내 작업의 안전성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 선장의 허가를 받고 작업을 해야 한다.

②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밀폐구역 작업

2. 고소 작업
3. 여객승선구역 작업
4. 선박의 수밀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5. 기타 선장이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제8장 비상상황 대응

제28조(사고처리 시 준수사항) 선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를 처리해야 한다.

1. 인명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
2. 사고 시 사고처리 업무는 모든 업무에 최우선하여 시행할 것
3. 사태가 낙관적이어도 항상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조치를 강구할 것
4. 선장의 대응조치 및 지시사항을 따를 것
5. 선장 및 선원은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박을 떠나지 말 것
6. 육상근무자는 육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제28조의2(준해양사고의 통보) 선장은 운항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통보할 수 있다.

제29조(비상대응) ① 선장은 다음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선원들의 임무, 소지품, 배치위치를 포함한 선내 비상부서배치표[붙임9]를 작성하여 조타실 등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반복 훈련으로 선원에게 주어진 임무를 숙지하도록 하며, 제반사항을 지휘함으로써 비상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1. 화재
2. 충돌, 좌초, 전복
3. 조타기 고장
4. 기관 고장(추진력 상실 포함)
5. 인명관련 비상 사고(퇴선, 익수자 발생, 밀폐구역 등 인명사고)
6. 해양오염 등

② 안전관리책임자와 선장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한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그 위치를 나타낸 도면[붙임5] 또는 그림, 비상 신호, 구명기구의 비치장소, 여객행동요령 등을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정전 시에도 선내에서 대피 장소까지 탈출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를 표시해야 한다.

③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 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즉시 사용가능한 통신장비 등을 동원하여 인접한 VTS 및 구조기관에 구조요청을 한 후 비상배치표에 따라 사고대응 및 수난구조기관의 구조협력과 안전지시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④ 선장은 화재 발생 시 화재 규모, 선박 위치, 소화지원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긴급대피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구조기관의 지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우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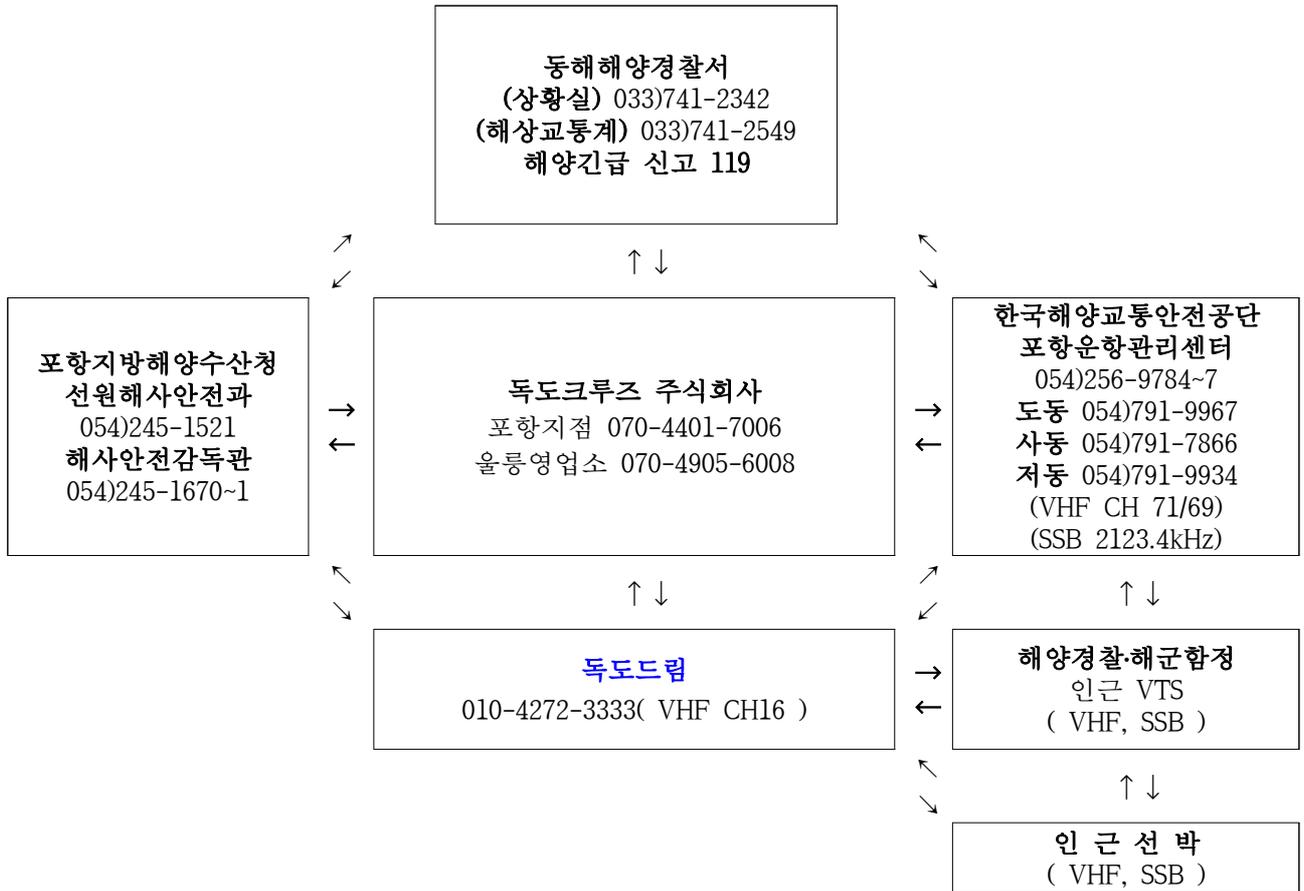
⑤ 선장은 비상상황 발생 시 경고방송, 기적 또는 사이렌을 이용하여 대피 지시를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장소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붙임11]의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여객의 행동요령 참고)

퇴선			
1번 탈출구	2번 탈출구	3번 탈출구	4번 탈출구
선장	1등항해사	1등기관사	기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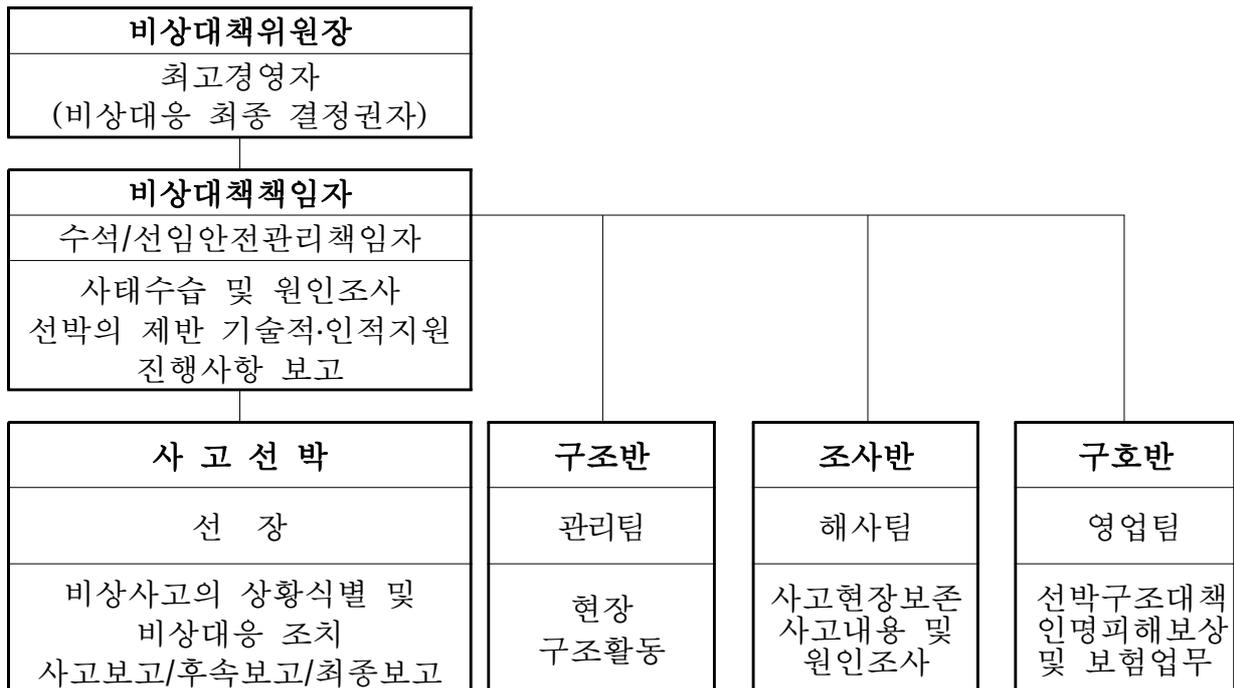
⑥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 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사고확대 방지 및 여객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사용가능한 통신장비 등을 이용하여 해양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구조기관 등에 즉시 구조요청

【비상상황 연락기관】



【비상조직도 및 임무】



2. 비상배치표에 따라 사고대응 및 수난구호기관의 구조협력과 안전지시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3. 해양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시에 대비하여 인근병원 응급실 등 의료

기관과 비상연락방법을 확보

가. 포항의료원(전화번호 054-247-0551)

나. 세명기독병원(전화번호 054-275-0005)

다. 울릉의료원(전화번호 054-790-6871)

4. 선장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 시 사고처리에 대한 증거확보 및 현장 보존

5. 선장은 사고의 내용 및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하며 입항 후 필요 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운항관리센터 및 해양경찰서에 자료제출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

제30조(피해보상 등의 조치) ① 회사는 해양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29조제5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구호반 등과 비상대책책임자, 비상대책위원장을 계통으로 하여 피해보상반을 운영하고, 여객·선원공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 등과 관련한 피해보상 조치를 한다.

제31조(안전교육 및 훈련 등) ① 여객선의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교육(선원 및 육상근무자 포함) 등을 실시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에 대한 안전운항, 해양사고방지 교육의 실시 방법, 실시 시기, 실시 장소, 강사 확보 방법이 포함된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

2.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에게 분기 1회 이상 교육 실시

3. 선장은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계획을 토대로 선원 교육계획 수립·시행

4. 선장은 비상시를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선원 및 기타 승선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②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해야 할 선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부서배치표를 게시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선내비상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훈련실시에 관한 내용은 항해일지에 기록해야 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한다.

③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사고 및 여객선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점검에 적극 참여한다.

④ 선박 비상대응훈련 시행주기 및 시나리오는 [붙임10]과 같다.

⑤ 선원 법정 교육은 [붙임7]와 같다.

⑥ 회사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안전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종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한 임직원이 변경된 경우 후임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9장 선박의 점검·정비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①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은 운항관리자와 합동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수행한다. 다만,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출항하는 경우에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운항관리센터에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항 전 점검 실시 결과 결함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 후 출항해야 하며, 감항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결함사항으로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기한을 두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여객선 정기점검은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객선 정기점검표에 따라 실시하며,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월례·특별점검·노후여객선 특별점검은 별지 제3호부터 제5호 서식에 의거 담당 운항관리자가 시행하는 점검에 안전관리책임자, 선장 및 기관장이 입회하여 수검해야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운항관리센터와 관계기관 및 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점검에 입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기한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점검기관에 증빙자료(서류 또는 사진 등)를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⑤ 여객선의 장비 및 시설 현황은 [붙임12]와 같다.

제33조(육상설비 점검)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 접안시설, 승객 탑승시설을 수시로 점검·확인하여 미비사항 발견 시 자체정비 또는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34조(선내 정비 및 점검 등) ① 선체 및 갑판은 입거 시 보수정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기관실 및 기기류는 점검표[붙임8]에 의거 점검 및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③ 갑판 보기류는 접·이안 시 및 하역 시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입항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 시 정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④ 계선설비의 작동부에 대해 윤활유(그리스) 주입 등의 정비작업 및 고착부에 대한 낙청·도장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⑤ 모든 창고는 정리정돈하고 거주구역 및 여객구역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 ⑥ 항해장비 및 통신설비에 대한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 ⑦ 항해등, 기적의 작동 상태 및 종 등의 비치상태를 매일 확인해야 한다.
- ⑧ 구명, 소방설비의 비치상태 및 성능을 수시로 확인하여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 ⑨ 중요기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자체정비 완료한 경우 고장개소, 긴급조치 내용 등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여 차기 정비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 ⑩ 장비 및 시설 등의 점검 후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정비해야 한다.

제35조(유류 관리) ① 기관장은 유류 수급 전 유류 잔량 확인, 유류 수급 설비 및 비상설비 점검, 비상연락수단 확보, 해양오염방지자재 배치, 당직인원 배치 등을 통해 유류 수급을 위한 준비를 한다.

② 기관장은 유류 수급 중 주기적으로 유류 잔량을 확인해야 하며, 비상설비 및 비상연락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③ 기관장은 유류 수급 후 유류 잔량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기관일지 및 기름기록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④ 기관장은 유류 수급 시 해상에 오염물질이 누설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오염물질을 확인한 경우 즉시 유조차량과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이를 알리고, 전 선원은 해양오염에 대한 비상대처활동을 수행한다.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양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⑤ 기관장은 오염방지자재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제36조(부속선의 점검 및 정비) 해당사항 없음

제10장 자료관리

제37조(문서관리) ① 선장은 선내 문서관리의 총괄책임자로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항관리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관리
2. 수발문서의 최종 승인자로서 문서내용의 검증
3. 안전관리문서 및 외부문서 등 문서의 총괄관리
4. 선내문서 및 기록의 통제
5. 승선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자료 등에 대한 외부유출 방지 및 관리 철저

② 선내 부서별 문서관리담당자는 1등항해사, 1등기관사로 정하며 부서 내 문서·기록의 수발신 및 작성·검토, 보관 및 폐기, 기록 관리의 제반사항을 관리한다.

③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문서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경 하에서 쉽게 검색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서를 보관·유지해야 한다.

제38조(문서생산 등) ① 문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은 아래의 원칙으로 수행한다.

1. 작성 : 업무 성격에 따른 실무담당자/책임자
2. 검토 : 부서장(부재시 최상위직급자)
3. 승인 : 선장

② 선장은 문서 내용에 따라 회람, 교육 또는 훈련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문서는 선원에게 공람 조치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③ 선내 문서는 항상 최신본을 유지해야 하고, 회람용 문서는 전 선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제39조(문서관리대장) 여객선에는 문서관리대장[붙임14] 서식에 따라 서류 및 증서 등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40조(문서의 폐기) ① 선장은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무효화된 문서 및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거나, 폐기여부를 결정하여 폐기하고 회사대표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실효된 문서를 법적/지식보존의 목적으로 보관하고자 할 경우, 안전 관리책임자 및 선장은 “참고용” 으로 표시하여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1조(해도관리) ① 선장 또는 항해사는 항행통보를 수령한 후 해당 항로 해도 및 수로서지에 대한 소개정을 실시하고, 발행 연도말 기준으로 1년간 보관한다.

② 선장 또는 항해사는 본선에서 보유 중인 해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도목록을 유지해야 한다.

제42조(여객선 이력관리장부)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1. 선박의 명세
2. 선박의 도입 및 매매
3.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4.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5. 해상사고 이력(「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6. 선박 개조 이력(「선박안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개조허가 대상을 말한다.)

② 선장은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와 관련 근거서류를 비치·관리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개정해야 한다.

제42조의2(여객선 안전정보공개) ① 사업자는 「해운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여객선 안전정보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1. 여객선의 선명, 선종, 선령, 총톤수, 여객정원 및 운항속력
2.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3. 해양사고 이력(「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공표되는 해양사고를 말한다)
4. 「해운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다만, 여객운송사업자의 내부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5. 「해운법」 제19조제1항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내용

② 사업자는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여객선 안전정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반기(半期)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제11장 운항관리규정의 확인, 검토 및 평가 등

제43조(운항관리규정 내부심사)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운항관리규정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 등에 대한 적합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항관리자의 정기적인 이행 상태 확인 전에 안전관리부서에 대한 내부심사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 검토 및 평가결과를 최고경영자 및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문서화된 운항관리규정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평가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제44조(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원인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관계 법령·규정에서 요구하는 절차·조건의 누락
2. 사고(선체, 기관사고, 인명손상), 기기 및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해 또는 운항 상 손실을 유발하는 경우
3. 지방해양수산청, 운항관리센터, 해양경찰서, 선박검사기관 및 기타 외부기관 점검 지적사항

② 부적합사항은 시정조치 절차[붙임15]에 따라 기한 내 시정조치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관계기관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후 시정조치를 종결한다.

제45조(운항관리규정의 비치 등)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선박과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 소속 직원과 여객이 이를 열람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운항기준도를 선박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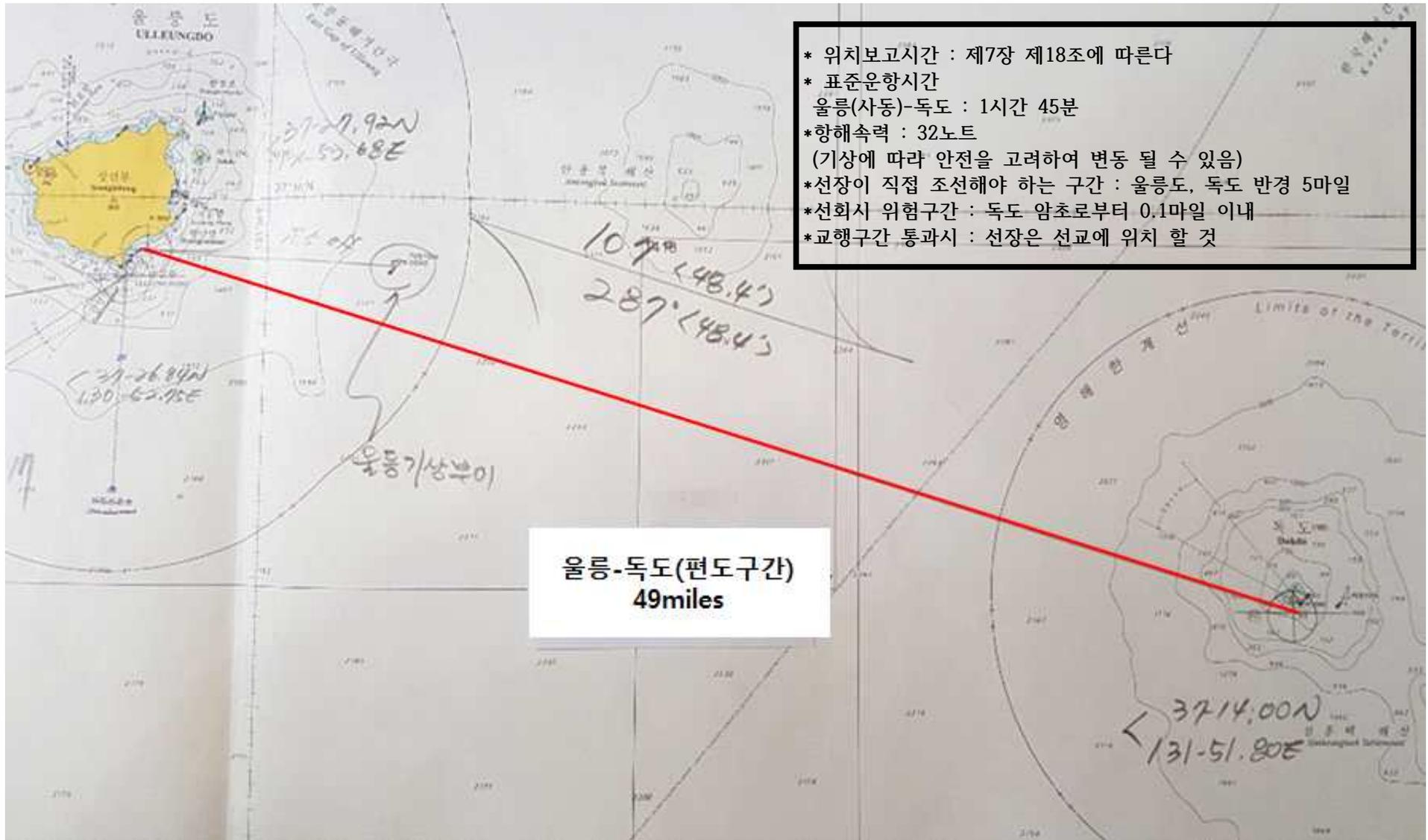
② 회사는 「해운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등에 따

라 운항관리규정 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심사를 필한 후 사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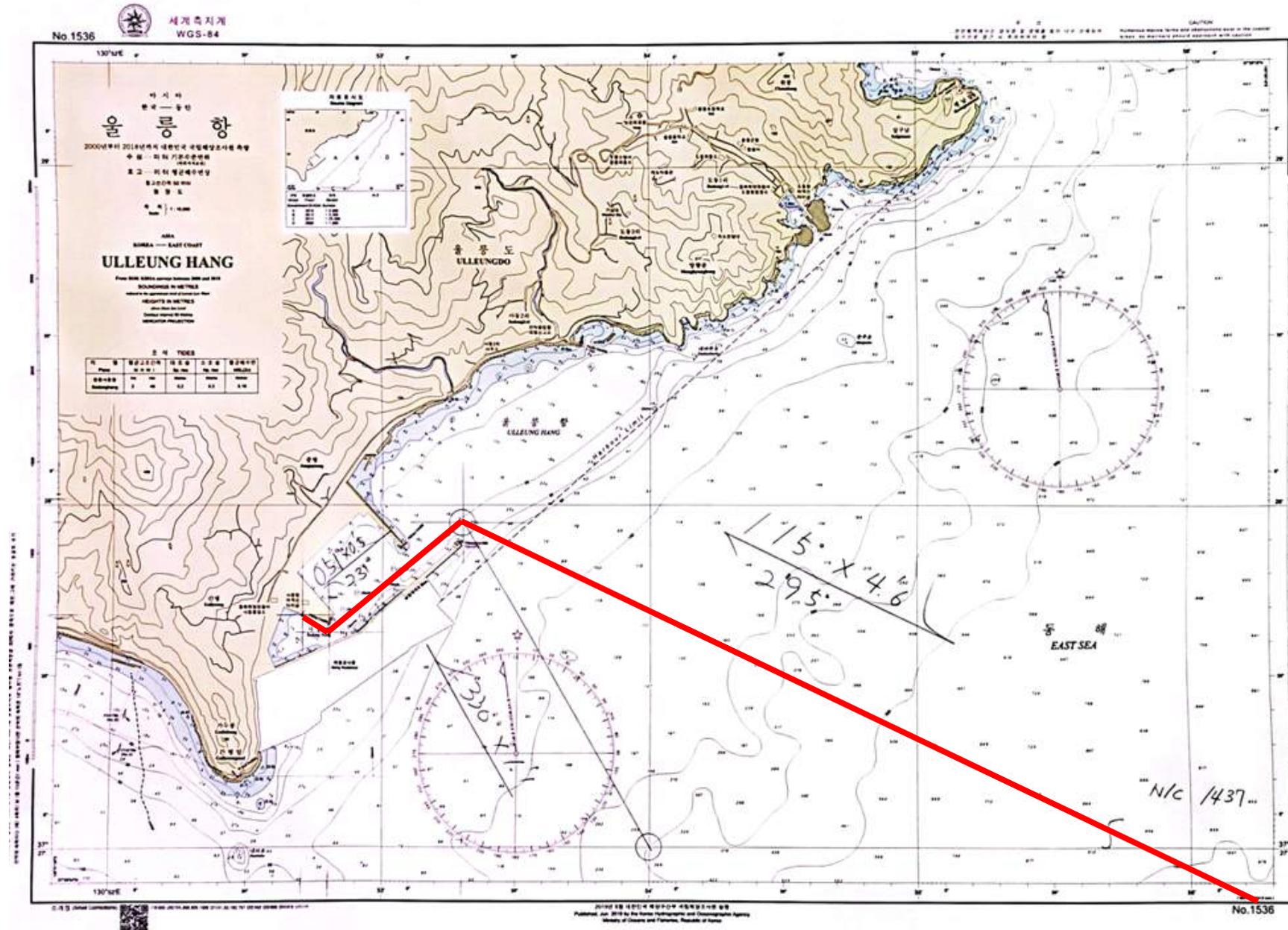
제46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 이외의 기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붙임 1] 항로도
- [붙임 2] 일반배치도
- [붙임 3] 인명구조장비
- [붙임 4] 화재제어도
- [붙임 5] 비상탈출경로도
- [붙임 6]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 [붙임 7] 선원법정교육 목록
- [붙임 8] 선박계획정비표
- [붙임 9] 비상부서 배치표
- [붙임 10] 비상대응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
- [붙임 11]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 [붙임 12] 여객선 장비 및 시설현황
- [붙임 13] 선박 문서 보존연한
- [붙임 14] 문서관리대장
- [붙임 15] 내부심사 절차서
- [붙임 16] 내부심사 점검표 및 보고서
- [붙임 17] 안전관리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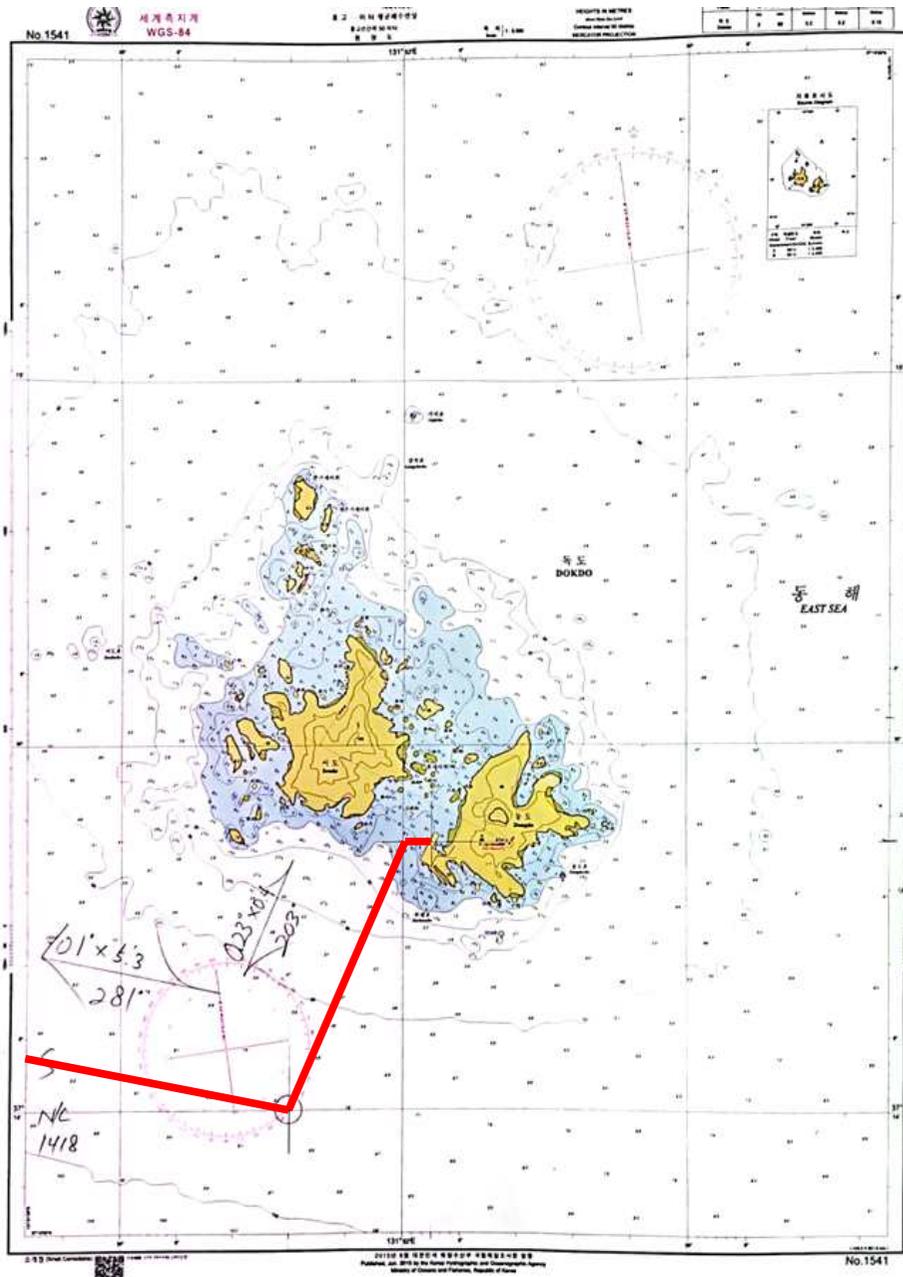
[붙임 1] 항로도
 <울릉-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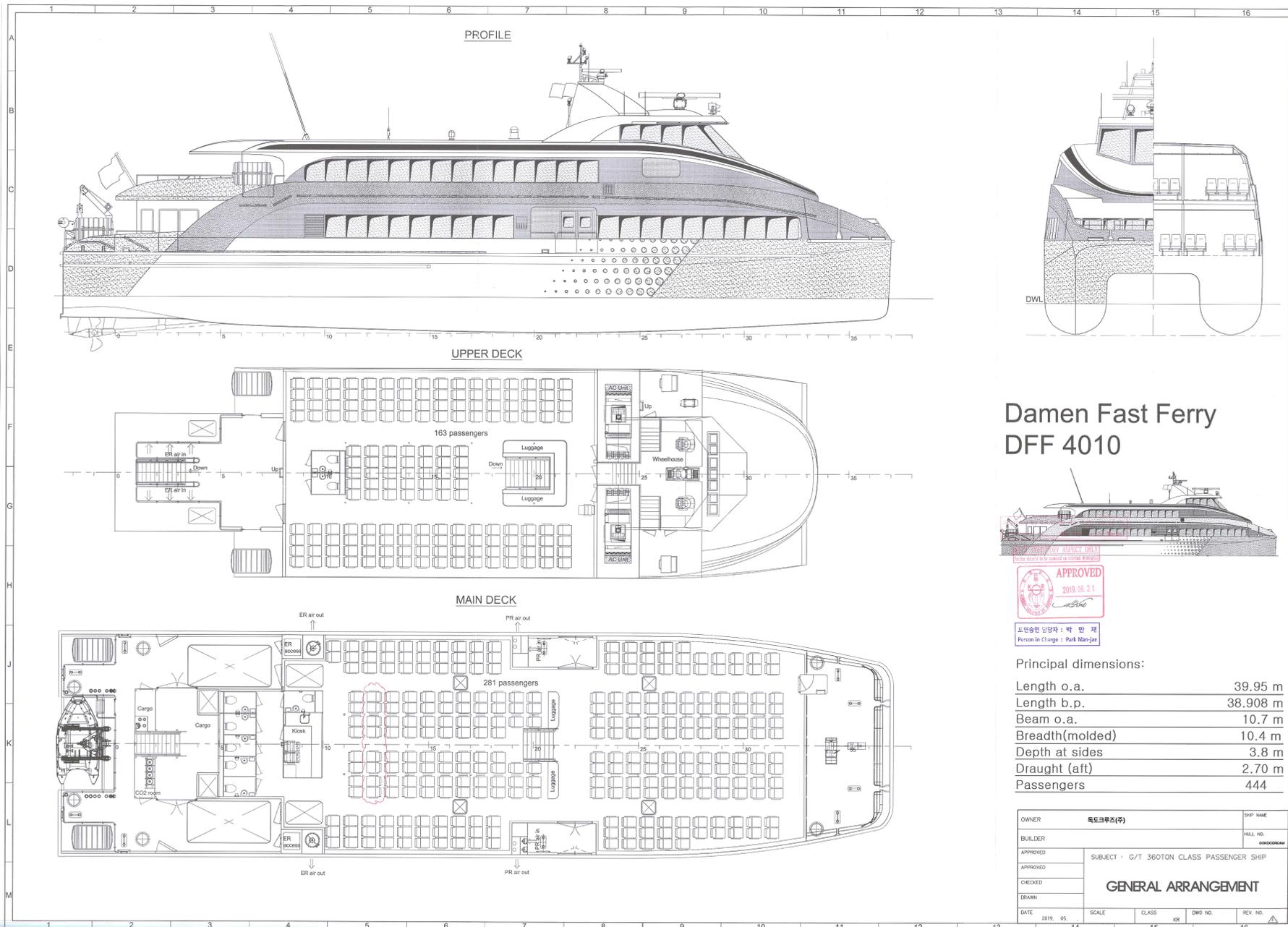
<울릉 사동항 항박도>



<독도 항박도>



[붙임 2] 일반배치도[GENERAL ARRANGEMENT]



[붙임6]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분류	위험물	수량 및 질량
화약류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은 제외), 소형화기용 공포탄	200개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	400개
	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의 흑색화약 및 무연화약, 연화(완구용인 것)	1kg
	도화선	3kg
고압가스	소화기, 약품류	2개
	흡연용 가스라이터(액화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것)	10kg
부식성 물질	축전지	2개
	소화액(부식성인 것) 약품류	3kg
독물류	시약으로 사용되는 독물로 용기등급이 2 또는 3인 것	3kg
인화성 액체류	살충살균제류(액체로서 인화성 이고 독성인 것), 약품류	3kg
	도료, 가솔린, 등유	20kg
	흡연용 가스라이터(연료유가 주입된 것)	10kg
산화성 물질류	고순도표백분, 보통표백분	3kg
가연성 물질류	셀룰로이드	1kg
	안전성냥, 약품류	3kg
	감파, 나프탈렌, 유성가공종이, 섬유	5kg
	필름(니트로셀룰로오스베이스로서 젤라틴으로 피복된 것)	20kg
유해성 물질	드라이아이스	5kg

※ 비고 :

- 수량 또는 질량은 1인당 휴대기준을 말하고, 질량은 용기 및 포장의 질량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 고압가스 용기의 경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되고 검사를 받은 것으로 공급 밸브가 잠겨 있어야 하고, 밸브가 외부에 돌출한 고압가스 용기는 밸브 보호 마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 설치 및 수리용 가스류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질량(kg)의 경우 가스 내용물의 순질량 기준이며, 용량(리터)의 경우 수(水)용량 기준임
 - LPG, 산소, 질소 용기의 경우 각 1개 이하일 것
 - 인화성 냉매의 경우 질량 5kg 이하의 용기 최대 2개 이하일 것
 - 비인화성-비독성 냉매의 경우 질량 20kg 이하의 용기 최대 2개 이하일 것
 - 용접용 LPG 및 산소의 경우 연결배관(호스)이 분리되어 있을 것
 - 차량 한 대 또는 한 사람 당 휴대할 수 있는 용기는 총 6개 이하일 것. 다만, 250g 이하의 냉매가스를 함유한 소형 용기(gas cartridge)의 경우 함께 질량 1kg 이하로 추가하여 휴대 가능
 - 인화성가스 용기와 산소 용기의 배출밸브는 서로 다른 방향을 보도록 적재할 것

[붙임 7] 선원법정교육 목록

교육명	구분 및 교육기간	유효기간	관련법령
기초안전교육	4.5일/재교육 2일	5년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상급안전교육	구명정(재) / 3(0.5)일	5년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상급소화(재) / 3(1)일	5년	
	응급처치(재) / 3(0.5)일	5년	
	고속구조정 / 1일	5년	
	구명정+소화+응급(재) / 5(2)일	5년	
해양오염방지 관리인교육	정규 / 3일	5년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 제121조, 동법시행령 제92조, 동법시행규칙 제78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재·보충 / 2일	5년	
레이더 시뮬레이션 교육	시뮬레이션 / 5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레이더 / 2일	없음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여객선교육	기초(재) / 2(1)일	5년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상급(재) / 4(2)일	5년	
여객선 직무교육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의료관리자 교육	자격취득교육 / 5일	없음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보수교육 / 2일	5년	
GMDSS 직무인정교육 3/4급통신사	기사반 / 5일	없음	전파법 시행령부칙 제5조
	전파전자 3급 통신사/5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전파전자 4급 통신사/3일	없음	
면허갱신교육	3급 이상 / 3일	5년	선박직원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4급 이하 / 2일	5년	
	통신 / 1일	5년	
당직부원교육	항해당직부원/5일 자동화선박 운항당직/1월	없음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면허전환교육	3급 해기사/ 5일 4급 또는 5급 /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4조의2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붙임 8] 선박계획정비표

선박계획정비표 8-1

○ (갑판부) 일별 점검표

점검 년월일 : 년 월 일

점검 시간 :

점검자 직책 : 성명 : 서명 :

	점검항목	양호	불량	비고
1	주기관 및 추진기 작동상태 점검			
2	통신기기 작동상태 점검			
3	Radar 작동상태 점검			
4	Gyro Compass 작동상태 점검			
5	Speed Log 작동상태 점검			
6	선내통신장비 작동상태 점검			
7	Echo Sounder 작동상태 점검			
8	Public Address System 작동상태 점검			
9	CCTV & Video System 작동상태 점검			
10	기적 작동상태 점검			
11	항해등 & 탐조등 작동상태 점검			
12	항해일지 기록상태 점검			
13	통신일지 기록상태 점검			

	3	Door 수밀 Rubber Packing 상태 확인																		
Windlass	1	Hyd. Oil Level 상태 확인																		
	2	Hyd. Oil Filter 상태 확인																		
	3	Power Switch 작동상태 확인																		
	4	Brake & Band 마모상태 확인																		
	5	Anchor, Chain & Wire 마모상태 확인																		
	6	Anchor 고정 Turn buckle 상태 확인																		
EPIRB	1	작동상태 확인																		
	2	Case & 자동이탈장치 확인																		
Radar Transponder	1	작동상태 확인																		
	2	고정상태 확인																		
객실현창	1	Rivet 이완상태 확인																		
	2	균열개소 확인																		
비상등	1	비상등 식별표시 여부 확인																		
	2	Lamp & Cover 파손 확인																		
	3	Lamp 밝기 확인																		
	4	작동상태 확인																		
기름기록부	1	작성상태 확인																		
	2	폐유 반출 확인서 부착 확인																		
폐기물기록부	1	작성상태 확인																		
	2	반출 확인서 부착 확인																		

	3	Compass Reader 확인				
계선색 및 Fender	1	손상여부 확인				
	2	마모여부 확인				
	3	보관상태 확인				
비상탈출 사다리	1	보관상태 확인				
	2	파손여부 확인				
Sprinkler	1	Sprinkler Head Inspection				

Lamp	1	객실조명 Lamp상태 및 불량품 점검확인				
Window Wiper	1	Blade 마모 상태 점검				
	2	Water Pump 작동 및 Tank Level 확인				
	3	Hose 이완여부 확인				
	4	Nozzle Tip 확인				

[붙임 9] 비상부서 배치표

비상 배치표 (MUSTER LIST)

비상배치(해제)신호 : ●●●●●●●● (단음 7회후 장음 1회 후 비상배치 방송 : OO구역 OO발생 전일 비상배치)

항개내 화재신호 : ■■■■■■ (장음 5회 반복)

퇴선신호 : ■■■■■■ (연속음 약 30초 이상)

직책	종류	소화배치 (업무 및 휴대품)	퇴선배치 (업무 및 휴대품)	배치번호		비상조타 (업무 및 휴대품)	수색인명구조 (업무 및 휴대품)	오염방제 (업무 및 휴대품)	주기판사고 (업무 및 휴대품)	충돌/방수대응 (업무 및 휴대품)	좌초사고 (업무 및 휴대품)	밀폐구역진입 및 구조훈련 (업무 및 휴대품)	범행대응 (업무 및 휴대품)
				휴대품	휴대품								
선장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여객유도 및 잔류자확인	NO 01 2WAY VHF EPIRB 중요서류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2WAY VHF 휴대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선교 총지휘 보고, 통신 및 대외업무 무전기 휴대
1등항해사		현장지휘 및 소화작업 회재상황 소화법 등 선교 연락 무전기, 안전등 휴대	2번탈출구, 여객유도 인원/구명동의확인 SART 조작, 슬라이더 설치	NO 02 2WAY VHF SART		선미 선교와 연락 무전기 휴대	현장지휘, 구조정장장 2WAY VHF 휴대 구급약품	현장지휘 및 방제작업 선교와 연락 무전기,유처리제 휴대 구급약품	선수, 선교 연락 투묘작업 준비 무전기 휴대 구급약품	현장지휘 및대응조치 선교와 연락 무전기, 안전등, 휴대 구급약품	현장지휘 및 대응조치 선교와 연락 무전기 휴대 구급약품	현장지휘 및 상황조치 선교와 연락 무전기 휴대 구급약품	현장지휘 및 상황조치 선교와 연락 무전기 휴대 구급약품
기관장		선교 선장보좌 소화기기작동	4번탈출구, 여객유도 슬라이더 설치	NO 04 중요서류 2WAY VHF		선교 선장보좌 BACK-UP SYS.조작	선교 선장보좌 기관실 지휘	현장 방제작업 현장방제관 무전기 휴대	선교 기관실 지휘	선교 기관실 지휘	선교 기관실 지휘	선교 기관실 지휘	선교 기관실 지휘 방망이 휴대
1등기관사		현장 동풍, 방화문 차단 소방원 개인장구 휴대	3번탈출구, 여객유도 인원/구명동의 확인 SART 조작, 슬라이더 설치	NO 03 SART 모포휴대		기관실 비상조타조작 무전기 교신	현장 구조정장하준비 2WAY VHF 휴대 방수복 휴대	현장 방제작업 방제작업,각종기기조작 안전등,쓰레받이,흡착포 휴대	현장 대응조치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무전기 휴대	현장 대응조치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무전기,책기,망치 휴대	현장 대응조치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무전기,책기,망치 휴대	현장 상황조치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무전기,안전등,구명줄 휴대	현장 상황조치 기관장지시 의거 업무수행 무전기 휴대
갑판장		현장 소화작업 소화작업 소화복 착용 무전기, 안전등 휴대	1번탈출구, 여객유도 인원/구명동의 확인 슬라이더 설치	NO 01 모포휴대 구급약품		객실 여객질서유지	현장 구조정대비트 조작 구명부환,히빙라 인	현장 방제작업 웨이스,쓰레받이휴대	선수 투묘작업 준비	현장 대응조치 1등항해사 보좌 각목,모포,메트휴대	현장 대응조치 1등항해사 보좌 각목,모포,메트휴대	현장 상황조치 1등항해사 보좌 안전등	현장 상황조치 1등항해사 보좌 포승줄휴대
2등기관사		항해사 보좌 소화작업 소화기 휴대	기관장 보좌	NO 04 모포휴대		1등기관사 보좌 비상조타조작	1등기관사 보좌	1등기관사 보좌	1등기관사 보좌	1등기관사 보좌	1등기관사 보좌	1등기관사 보좌	1등기관사 보좌

※ 총원퇴선의 명령을 선장이 『총원퇴선, 퇴선부서배치』 방송후, 『구명뗏목투하시작』 구령으로 한다.

※ 구명설비, 소화설비 등 장비점검자 : (정)1등항해사 (부)기관장

구명뗏목 배치	정장	구명뗏목번호	객실(좌석)배치	소집장소	구명뗏목 배치	정장	구명뗏목번호	객실(좌석)배치	소집장소
선장 / 갑판장	선장	NO 01	1층 우현	1번 비상탈출구	1등기관사	1등기관사	NO 03	2층 우현	3번 비상탈출구
1등항해사	1등항해사	NO 02	1층 좌현	2번 비상탈출구	기관장 / 2등기관사	기관장	NO 04	2층 좌현	4번 비상탈출구

※ 부서배치시에는 긴바지, 장갑, 안전화, 안전모를 착용하고 휴대품을 지참한다. (퇴선시는 착용복장 그대로 배치한다.)

※ 업무대행 : 선장⇒ 1등항해사, 기관장⇒ 1등기관사, 1등항해사 ⇒ 갑판장, 1등기관사 ⇒ 2등기관사, 갑판장 ⇒ 1등항해사

※ 승무원은 각자 배치 받은 구명뗏목의 투하를 확인하고 선장의 지시에 따라 담당위치에서 여객을 유도한다.

※ 여객유도시 노약자, 어린이, 부녀자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선 장 :

[붙임 10] 비상대응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

선내 비상훈련의 주기

구분		주기	대상자	
선내숙지 훈련		수시	모든 선원	
해상인명안전 훈련	소화훈련	10일	모든 선원	
	퇴선훈련	10일	모든 선원	
해난사고대응 훈련	선체손상 대처훈련 (충돌 및 좌초, 추진기관 고장, 악천후 대비 등)	3개월	모든 선원	
	인명사고시 행동요령	해상추락	6개월	모든 선원
		밀폐공간에서의 구조	2개월	모든 선원
비상조타훈련		3개월	모든 선원	
기름유출 대처훈련		매월	모든 선원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

▣ 비상상황 유형

구분	비상상황 유형	보 고 기 준
1.	소화	선내 구역에서 발생한 화재로써, 확산되어 선박인원으로 제어 불가능한 경우, 선박의 안전 및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퇴선	화재 및 충돌·좌초로 인하여 선박을 탈출해야 할 경우
3.	비상조타	선박 조타기의 고장으로 선박이 조종불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 본선의 위험 여부, 본선자체수리 여부, 타선박 운항상 지장이 없는 지를 종합 판단하여 대처한다.
4.	인명구조	선원 및 여객이 해상에 빠진 경우 자선이 수색 및 구조를 하는 경우 및 타선박의 지원 사항 포함
5.	기름유출대처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의 확산 방지 및 유출된 기름의 수거
6.	충돌·좌초 및 전복	충돌로 인한 파손 부위의 확인 및 침수 방지와 전복으로 인한 비상대응 훈련
7.	추진기관 고장	신속한 보고와 효과적인 선조치를 취하여 선박안전을 확보하고 유사시 비상투묘
※ 통신유지 사항		SSB, VHF, 무선전화기 등 가능한 한 통신수단을 사용한다.

1-1) 소화·퇴선 훈련 시나리오(기관실)

<기관실>

상황진행 : 2기사가 기관실 순찰 중 좌현기관실에서 B급 화재 발견함.

무전기로 브릿지에 보고 후 주위의 이동용 소화기로 초기진화 실시한다.

기관장 : 선장님 좌현기관실에 B급 소형 화재 발생 했습니다. 2기사 초기 진압 중입니다!

선 장 : 화재 비상신호 * * * * * ---- (단음7회 장음1회)
좌현기관실 B급 소형 화재발생, 소화부서배치” 훈련 (2회반복)

선 장 : 기관장 좌현엔진정지, 좌현기관실 연료차단하라.

기관장 : 좌현엔진정지, 좌현기관실 연료차단 (복창)

기관장 : 좌현엔진정지하고 좌현기관실 연료차단 하였습니다.

선 장 : 객실에 안내방송 실시하고 본사 및 관계기관에 화재사실을 통보한다.

승객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선 좌현기관실에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1차적으로 본선 승무원들에 의해 자체 화재진압중에 있습니다. 승객여러분들께서는 화재발생부근의 접근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VHF71) 여기는 독도드림입니다. 긴급상황입니다. 본선 __시 __분에 좌현기관실에 화재가 발생되어 자체 화재진압중에 있으며, 코스 __도 속력 __노트 현재위치는 북위 __도 __ 분, 동경__도 __분입니다.

상황진행 : 이때 1항사 1기사는 선미 갑판 좌, 우현에 비치된 DRY POWDER소화기를 들고 “소화부서 배치”를 외치며 현장에 집결한다.

1항사 : 브릿지-현장. 화재현장 인원보고
현장요원 총원4명 현재원3명 열외1명 열외는 2기사 기관실에서 초기진화중입니다

선 장 : 현장-브릿지 현장 투입해서 이동식 소화기로 초기진화 실시하라

1항사 : 이동식 소화기로 초기진화 실시하겠습니다

1항사 : 브릿지-현장 이동식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시도중이나 화재가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이동식 소화기로는 소화가 힘들 것 같습니다. 고정식 CO2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선 장 : 알았다. 고정식 CO2소화를 실시하니 현장요원은 좌현기관실 통풍, 댐퍼차단 후 좌현기관실문을 모두 폐쇄하고 기관실에서 철수하라.

1항사 : 브릿지-현장. 화재현장 퇴각 통풍차단 댐퍼차단

상황진행 : 통풍 차단 댐퍼차단을 외치며 철수한다.

1항사 : 브릿지-현장 현장요원 4명 좌현기관실 통풍, 댐퍼차단 후 좌현기관실문 모두 폐쇄하고 기관실에서 철수하였습니다.

선 장 : 브릿지에서 고정식CO2 분사할테니 화재주변 냉각을 위해 소화호스 준비하라.

1항사 : 현장-브릿지 소화호스 준비 하겠습니다.

선장 : 기관장 좌현기관실에 고정식CO2 분사하라.

기관장 : 좌현기관실 고정식CO2분사! (기관장은 고정식CO2 조작)
좌현기관실 고정식CO2 분사완료 했습니다.

선 장 : 현장 - 브릿지 1항사 조타실에서 고정식CO2 분사하였다.
상황을 계속 주시하라.

1항사 : 알겠습니다! 소화호스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선 장 : 1항사 소화펌프 작동하겠다.

1항사 : 소화펌프 작동!! 소화펌프 작동 (현장요원 복창)

선 장 : 기관장 소화펌프 작동하라.

기관장 : 예! 소화펌프 작동하였습니다.

1항사 : 소화펌프 물분사 상태 양호합니다.

선 장 : 기관실 인접 격벽 냉각 실시하라.

선장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중간 상황 보고, 객실에 구명조끼 착용 방송을 실시한다.

승객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선 좌현기관실 화재를 CO2로 진화중에 있습니다. 승객여러분께서는 만일을 위해서 좌석밑에 부착되어있는 구명조끼상자를 개방 한 후 한분도 빠짐없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각 좌석에 비치된 안전카드의 탈출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회반복)

상황진행 : 소화반은 소화 호스를 기관실 외벽 쪽으로 향해 물을 뿜으며 열을 냉각시킨다.

시간이 흐른 후 1항사 기관실 부근에 페인트가 녹아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선장에게 퇴선을 건의한다.

1항사 : 브릿지-현장 기관실 외벽 페인트 녹아 내리고 있어 화재가 진화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화 불가하여 퇴선을 건의합니다.

선 장 : 알았다. 기관장 소화펌프 정지 우현엔진 정지

기관장 : 예! 소화펌프 정지, 우현엔진 정지하였습니다.

선 장 : 퇴선신호----- (연속음 30초이상)

퇴선부서배치 훈련 (2회반복)

선 장 : 전 승무원은 치참물 빠짐없이 지참하고 구명조끼 착용이 완료되면 담당 여객 안내하라.

상황진행 : 선장은 퇴선명령을 내리고 회사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구조를 요청한다.

수고하십니다. 독도드림 선장입니다.

본선 좌현기관실 화재 자체진화가 불가능하여 퇴선을 결정하였습니다.

본선현재위치는 북위 __도 __ 분, 동경__도 __분이며 현지 기상은

풍향__풍, 초속__미터, 파고__로 일고 있습니다.

승선인원은 승무원 6명, 승객 410명 승선중이며 현재 부상자는 없습니다.

조속한 구조를 바랍니다.

회사 안전관리책임자 :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으니 승객 및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장 : 선내 퇴선 방송한다.

승객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선 좌현기관실 화재발생하여 자체진화에 임하였으나 화재가 계속 확산되어 진화가 불가능하여 퇴선을 명합니다.

본선의 현재위치는 울릉도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약__마일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본선과 육상구조본부간에 연락이 되어있으며 해경구조선이 약 30분 후에 현지에 도착 예정이오니 안심하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퇴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지품은 중요하고 간편한 휴대품만 휴대하시고 탈출 슬라이드를 타기 전에 하이힐, 구두 등 날카로운 물건은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선 시 본선의 비상탈출구는 2층은 뒤쪽 좌·우현 2군데, 1층은 중앙 좌우현, 뒤쪽 좌우현 4군데 총 6군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선의 비상탈출구는 2층은 뒤쪽 좌·우현 2군데, 1층은 중앙 좌우현, 뒤쪽 좌우현 4군데 총 6군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승객여러분께서는 당황하시거나 서두르지 마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퇴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객여러분중에 군인이나 경찰관이 계시면 저희 승무원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 장 : 좌현갑판 접근 어려워 4호정은 투하하지 않겠습니다.

기관장 2기사는 96명 1,2,3호정으로 33명씩 분산 답승 시킬꺼니까 승객들 유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선 장 : 선교에서 자동으로 구명뗏목을 투하하겠다.

선 장 : 기관장! 구명뗏목1,2,3호정 투하하라.

기관장 : 구명뗏목 1,2,3호정 투하.

기관장 : 구명뗏목 1,2,3호정 투하완료 하였습니다.

1항사 : 구명뗏목 1,2,3호정 모두 정상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선 장 : 각정장은 구명뗏목을 정 위치에 고정시키고 슬라이드 설치 완료됨 보고하라.

1항사 : 2호정 슬라이드 설치완료.

1기사 : 3호정 슬라이드 설치완료.

갑판장 : 1호정 슬라이드 설치완료.

선 장 : 각 정장은 승객들 탑승시키면서 인원파악하고 탑승완료 인원보고 후 퇴선하라.

1항사 : 2호정 인원보고 승객 135명 1항사포함 136명 탑승완료 퇴선하겠습니다.

1기사 : 3호정 인원보고 승객 140명 1기사포함 141명 탑승완료 퇴선하겠습니다.

상황진행 : 2기사 선내 잔류자 확인후 보고하고 1호정에 탑승한다.

갑판장 : 1호정 인원보고 승객 135명 갑판장 기관장 2기사 포함 138명 탑승완료 대기중입니다.

상황진행 : 선장은 다시 한번 선내 잔류자 확인 후 1호정으로 퇴선한다.

훈련종료

1-2) 소화·퇴선 훈련 시나리오(2층 객실)

<2층 객실>

상황진행 : 갑판장이 객실 순찰 중 2층 객실 선수에서 A급 화재 발견함.
무전기로 브릿지에 보고 후 2층 객실 스프링클러 작동 및
주위의 이동용 소화기로 초기진화 실시한다.

1항사 : 선장님 2층 객실 선수쪽에 A급 소형 화재 발생 했습니다 갑판장이 초기진압
중입니다!

선 장 : 화재 비상신호 ----- (장음5회)

2층객실 A급 소형 화재발생, 소화부서배치” 훈련(2회반복)

선 장 : 객실에 안내방송 실시하고 본사 및 관계기관에 화재사실을 통보한다.

승객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선 2층 객실에 선수에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본선 승무원들에 의해
자체 화재 진압 중에 있사오니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화재 발생부근의 접근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VHF71) 여기는 독도드림입니다. 긴급상황입니다. 본선 __시 __분에
객실 2층 객실에 화재가 발생되어 화재 진압 중에 있으며, 코스
__도, 속력 __노트 현재위치는 북위 __도 __ 분, 동경__도
__분입니다.

상황진행 : 이때 전 선원은 집결지로 비상배치포에 의하여 긴급 집결하게 된다.
“소화부서 배치” 외치며 현장에 집결한다.

1항사 : 브릿지-현장. 화재현장 인원보고
현장요원 총원 4명, 현재원 3명, 열외 1명 열외는 갑판장 현장에서
초기진화중 입니다.

선 장 : 소화 호스 현장에 투입하여 화재 진압 및 주변 냉각 실시하라.

1항사 : 예. 알겠습니다.

1항사 : 소화호스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선 장 : 현장-브릿지 1항사 갑판장에게 승객들 1층 객실로 유도토록 지시하라

1항사 : 브릿지-현장. 승객들 1층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장 : 소화펌프 작동하겠다.

1항사 : 소화펌프 작동!! 소화펌프 작동 (현장요원 복창)

선 장 : 기관장 소화펌프 작동하라.

기관장 : 예! 소화펌프 작동하였습니다.

1항사 : 브릿지-현장. 소화펌프 물 분사 압력 양호합니다.

소화 호스 사용하여 화재 진압 및 객실 외벽 냉각 실시 하겠습니다.

선 장 : 객실에 구명조끼 착용 방송한다.

선장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중간 상황보고

승객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선 객실 2층 객실 선수 화재를 진화 중에 있으며 승객여러분께서는
만일을 위해서 좌석 밑에 부착되어있는 구명조끼상자를 개방 한 후 한분도
빠짐없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각 좌석에 비치된 안전카드의
탈출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회반복)

1항사 : 브릿지-현장 소화 호스로 진화를 시도 중이나 화재가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이대로는 화재 진압이 불가하여 퇴선을 건의합니다..

선 장 : 알겠다. 기관장 소화 펌프 정지, 좌우현 엔진정지, 좌우현 기관실 연료
차단하라.

기관장 : 소화 펌프 정지, 좌우현 엔진정지, 좌우현 기관실 연료차단 (복창)

기관장 : 소화 펌프 정지, 좌우현 엔진 정지하고 좌우현기관실 연료차단 하였습니다.

선 장 : 퇴선신호 ----- (연속음 30초이상)

총원 퇴선부서배치 훈련 (2회반복)

선 장 : 전 승무원은 지참물 빠짐없이 지참하고 구명조끼 착용이 완료되면 담당 여객 안내하라.

상황진행 : 선장은 퇴선명령을 내리고 회사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구조를 요청한다.

수고하십니다. 독도드림 선장입니다.

본선 객실 2층 화재로 자체진화가 불가능하여 퇴선을 결정하였습니다.

본선현재위치는 북위 __도 __ 분, 동경__도 __분이며 현지 기상은 풍향__풍, 초속__미터, 파고__로 일고 있습니다.

승선인원은 승무원 6명, 승객 410명 승선중이며 현재 부상자는 없습니다. 조속한 구조를 바랍니다.

회사 안전관리담당자 :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으니 승객 및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장 : 선내 퇴선 방송한다.

승객여러분께 알리겠습니다. 본선 객실 2층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자체진화에 임하였으나 화재가 계속 확산되어 진화가 불가능하여 퇴선을 명합니다.

본선의 현재위치는 울릉도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약__마일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본선과 육상 구조본부간에 연락이 되어있으며 해경구조선이 약 30분 후에 현장에 도착 예정이오니 안심하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퇴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지품은 중요하고 간편한 휴대품만 휴대하시고 탈출 슬라이드를 타기 전에 하이힐, 구두 등 날카로운 물건은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선 시, 1층의 중앙 좌우현, 뒤쪽 좌우현 4군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선의 비상탈출구는 1층 중앙 좌우현, 뒤쪽 좌우현 4군데 마련되어 있으니 승객여러분께서는 당황하시거나 서두르지 마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퇴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객 여러분중에 군인, 경찰이 계시면 승무원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 장 : 선교에서 자동으로 구명뗏목을 투하하겠다.

선 장 : 기관장! 구명뗏목1,2,3,4호정 투하하라.

기관장 : 구명뗏목 1,2,3,4호정 투하.

기관장 : 구명뗏목 1,2,3,4호정 투하완료 하였습니다.

1항사 : 구명뗏목 1,2,3,4호정 모두 정상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선 장 : 각정장은 구명뗏목을 정 위치에 고정시키고 슬라이드 설치하라.

1항사 : 2호정 슬라이드 설치완료.

1기사 : 3호정 슬라이드 설치완료.

기관장 : 4호정 슬라이드 설치완료.

갑판장 : 1호정 슬라이드 설치완료.

선 장 : 각 정장은 승객들 탑승시키면서 인원파악하고 탑승완료 후 인원 보고하라.

1항사 : 2호정 인원보고. 승객108명, 1항사, 총 109명 탑승완료

1기사 : 3호정 인원보고. 승객96명, 1기사, 총 97명 탑승완료

선 장 : 2기사는 선내 잔류자 확인 후 잔류자 없으면 4호정에 탑승하라

2기사 : 1, 2층 선내 잔류자 없습니다.

기관장 : 2기사 탑승 4호정 인원보고. 승객96명 기관장, 2기사, 총 98명 탑승완료

갑판장 : 1호정 인원보고. 승객108명, 갑판장, 총109명 탑승완료

선 장 : 2,3,4호정 퇴선하라.

1항사 : 2호정 탐승완료 퇴선하겠습니다.

1기사 : 3호정 탐승완료 퇴선하겠습니다.

기관장 : 4호정 탐승완료 퇴선하겠습니다.

갑판장 : 1호정 탐승완료 대기하겠습니다.

상황진행 : 선장은 다시 한번 선내 잔류자 확인 후 1호정으로 퇴선한다.

훈련종료

2) 비상조타 훈련 시나리오

상황진행 : ___월___일___시 울릉도로 항해중 침로가 유지되지 않는 고장발생.

선 장 : 비상조타 비상신호 * * * * * (단음7회 장음1회)

훈련 비상조타 부서배치 훈련(2회반복)

상황진행 : 선장은 해경 및 주의선박에게 경고메세지 송신,
조종불능 신호(흑구2개)표시하고 회사에 보고한다.

다같이 비상조타 부서 배치를 외치며 선미 좌현 갑판에 집결한다.

1항사 : 현장 인원 보고 총원4명 현재원 3명, 열외 1명, 갑판장은 여객질서유지에 투입되었습니다. 현장 인원 현장에 집결했습니다.

선 장 : 현장-선교, 현장 투입 하라.

1항사 : 현장 투입 (복명복창)

1기사 : 선교-현장, 우현 비상조타실 비상조타 준비완료.

2기사 : 선교-현장, 좌현 비상조타실 비상조타 준비완료.

1항사 : 선교-현장, 선미 부근 항행선박 및 특이사항 없습니다.

선 장 : 알았다. 좌·우현 비상조타실 우현 15도

1기사 : 우현 비상조타실 우현 15도

2기사 : 좌현 비상조타실 우현 15도

선 장 : 선내 안내방송을 한다.

현재 본선은 조타장치 이상으로 비상조타로 감속 운항 중에 있으며
다른 안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승객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기사 : 우현 비상조타실 우현 15도 잡았습니다.

2기사 : 좌현 비상조타실 우현 15도 잡았습니다.

선 장 : 좌·우현 비상조타실 좌현 15도

1항사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투묘준비 상태로 대기하라

1기사 : 우현 비상조타실 좌현 15도

2기사 : 좌현 비상조타실 좌현 15도

1항사 : 선수 투묘 요원 배치하겠습니다.

1기사 : 우현 비상조타실 좌현 15도 잡았습니다.

2기사 : 좌현 비상조타실 좌현 15도 잡았습니다.

1항사 : 선교-선수. 투묘 준비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현 상황 안내방송한다.

승객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본선 추진기에 이상이 발생하여 현재 확인중이며 비상조타장치로 항해중에
있습니다.

본선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승객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진행 : 기관장은 조타장치 점검결과 콘트롤 케이블 단락을 확인하고 수리
완료 한다.

선장은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선장은 관계기관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관련된 상세한 기사를
관련문서에 기재한다.

승객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선 추진기 2 대중 한 대가 케이블 단락으로 고장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고장난 추진기 수리가 완료 되었습니다.

현시간부터 정상운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객여러분의 양해 감사드립니다.

선 장 : 비상부서배치 해제

훈련종료

3) 인명구조 훈련 시나리오

상황진행 : 울릉도를 출항하여 독도로 항해중 여객 1명이 바다로 추락, 2기사가 순찰 중 익수자를 발견하고 구명부환을 투하한 후 선교에 보고하고 익수자의 위치를 파악한다.

선 장 : 수색인명구조 비상신호 * * * * * ---- (당음7회 장음1회)
우현선미 익수자발생, 수색인명구조요원배치 훈련 (2회반복)

상황진행 : 선장은 현 위치를 전자해도 및 GPS에 마킹하고 현재의 위치 및 기상, 시간 등을 파악하고 관계기관에 상황 보고를 한다.

선 장 : 익수자 발생사실을 본사, 운항관리실, 해경에 통보한다.

여기는 독도드림입니다. 긴급상황입니다.

본선에 익수자 발생하여 현재 구조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간은 ___시___분 코스___속력___ 현재위치 북위___도___분 동경___도___분이며 현재 기상은 풍향___ 풍속___ 파고___입니다.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책임자 : 양지했습니다. 본사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항사 : 수색인명구조요원 4명 선미갑판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현재 익수자 위치로 회항중이다. 1항사는 익수자 위치 발견되면 보고하라.

1항사 : 익수자 발견되면 보고하겠습니다.

상황진행 : 1항사는 현장요원의 견시 위치를 배정하고 구조정 강하 준비를 지시한다.

갑판장은 우현에, 2기사는 좌현에 무전기를 휴대하고 선미 상황을 파악한다.

선 장 : 11시방향 200M에 익수자 발견했다. 현장 익수자 위치 파악하라.

1항사 : 11시방향 200M 익수자 발견. 복창

상황진행 : 현장요원들은 익수자 위치를 구령 복창하고 구명부환, 히빙라인 준비를 명하고 2항사는 구급약과 모포, 들것을 준비한다.

1항사 : 구명부환, 히빙라인 준비

2기사 : 11시방향 200M에 익수자 발견하였습니다.

1항사 : 조타실-현장, 익수자 위치 파악하였으며 구조 준비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알았다. 계속 주시하라.

1항사 :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1항사 : 10시방향 100M 익수자 확인.

현장요원 : 10시방향 100M 익수자 확인. 복창

1항사 : 조타실-현장, 10시방향 100M 익수자 확인하였습니다.

선 장 : 알았다. 부상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1항사 : 조타실-현장, 익수자 10시 방향 50M

조타실-현장, 익수자 10시 방향 20M

선 장 : 기관장 엔진 정지, 클러치 OFF.

1항사 구조정 준비. 구명부환 준비.

기관장 : 엔진정지하고 클러치 OFF하였습니다.

1항사 : 구조정 강하준비, 구명부환 준비.

갑판장 : 구명부환 준비

1항사 : 구명부환 투하!

현장요원 : 구명부환 투하! 복창

상황진행 : 익수자방향으로 구명부환 투하하고 구조정으로 익수자에게 접근하여 구조정에 탑승시킨다.

1항사 : 익수자 구조정에 탑승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알았다. 구조정 원위치.

1항사 : 구조정 원위치.

현장요원 : 구조정 원위치. 복창

상황진행 : 구조정을 원위치로 끌어올린 후 익수자를 본선에 승선시킨다.
익수자가 선상으로 승선하면 현장요원은 응급조치 후 객실로 이동시킨다.

1항사 : 조타실-현장, 익수자 및 구조정요원 3명 승선 완료하였으며 익수자의 현재 건강상태는 외관상 양호하며 객실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색인명 구조요원 4명 이상없습니다.

선 장 : 수고했다. 환자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보고하라.
이상으로 수색 인명구조 훈련 상황을 종료한다.

선 장 : 비상부서배치 해제

훈련종료

4) 오염방제(기름유출대처) 훈련 시나리오

상황진행 : ___월 ___일 울릉도 입항 중 좌초사고발생.

선 장 : 좌초 비상신호 * * * * * ---- (단음7회 장음1회)
좌초사고 부서배치 훈련 (2회반복)
기관장에게 기관실 이상유무 확인 및 연료유 유출여부 확인을 지시한다.
좌초시간·위치·흘수·수심·저질·조석·조류 등을 확인 지시한다.

1항사 : 좌초사고 부서 4명 집합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1항사는 전 VOID 탱크를 점검하라.
선장은 좌초신호(홍등2)를 점등 또는 흑구2개를 설치한다.
1기사는 연료유 탱크 측심하라.

상황진행 : 전 승무원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선체 전반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항사는 측심 및 VOID 탱크를 점검한다.

1항사 : 브릿지-1항사, 전 VOID 탱크 확인결과 이상 없으나 본선 좌현 현측 주위에서 연료유로 추정되는 약 4 평방미터의 기름띠가 발견되었습니다.

선 장 : 오염방제 비상신호 * * * * * ---- (단음7회 장음1회)
오염방제 부서배치 훈련 (2회반복)

1항사 : 브릿지-현장, 오염방제부서 4명 선미갑판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현장-브릿지, 지금부터 절대 금연을 실시한다.
갑판부는 좌현에 발견된 기름띠 제거작업에 임하고 기관부는 유출원인 파악에 총력을 기하라.
현재 상황을 안전관리담당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당직자를 제외한 전 승무원은 유흡착포 등을 사용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할 것.

여기는 독도드림입니다. 긴급상황입니다. 안전관리담당자 부탁드립니다.
본선이 좌초되어 해양오염 발생하여 현재 방제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간은 ___시___분 코스___속력___현재위치 북위___도___분
동경___도___분이며 현재 기상은 풍향___풍속___파고___입니다.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담당자 : 양지했습니다. 본사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운항관리실(해경상황실)입니까? 여기는 독도드림입니다. 긴급상황입니다.
현재 본선이 좌초되어 및 해양오염 발생되어 방제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간은 ___시___분 코스___속력___현재위치 북위___도___분
동경___분이며 현재 기상은 풍향___풍속___파고___입니다.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상황진행 : 기관장이 선장에게 좌현 연료유 탱크 측심치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선장과 상의하여 우현 연료 탱크로 긴급이송을 지시한다.

기관장 : 선장님! 좌현 연료유 탱크의 측심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름유출이 좌현 연료유 탱크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좌현 연료유를 우현 연료유 탱크로 이송하겠습니다.

선 장 : 알겠습니다. 이송하세요.

1기사 : 브릿지-기관실, 좌현 연료유 탱크를 제외한 기관실은 이상 없습니다.

상황진행 : 선장은 기관장에게 좌현 연료유 탱크 계속 측심하여 보고 지시한다.

기관장 : 선장님, 우현 연료유 탱크로의 기름이송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상황진행 : 방제선과 예인선 도착. 본선주위 오일펜스 설치. 방제선 방제

작업시작.

선 장 : 기관장, 양현 기관 사용가능 여부 확인바랍니다.

기관장 : 예! 양현 기관 사용가능하며 좌현 연료유 이송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전 승무원에게 알린다. 현재 연료유 이송 완료하였으며 기관 사용 및 예인선을 이용하여 안전한 수역으로 이동할 것이다.

상황진행 : 안전관리담당자 및 관계기관에 현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한다.

기관장 및 1등항해사에게 사고와 관련된 상세한 기사문서로 기재
지시한다

선 장 : 비상부서 배치 해제

훈련종료

5) 충돌사고 및 방수대응 훈련 시나리오

상황진행 : __월 __일 울릉도에서 독도로 항해 중 __시 __분 어선과 충돌 사고 발생.

선 장 : 충돌사고 방수대응 비상신호 * * * * * ----- (단음7회 장음1회)

훈련 우현 선수 어선과의 충돌사고 발생.

충돌방수부서배치 훈련(2회반복)

1항사 : 충돌방수부서 4명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 후 보고하겠습니다.

(잠시후) 본선 우현 FORE PEAK 탱크 내 약 20cm 파공이 발생하였습니다.

탱크 내 약 20cm높이의 해수가 침수되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으며 상대 선박은 선수부위 파손되었고 약간의 침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상대선박 낙수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선 장 : 현장-브릿지, 파공부위 복구조치하고 상황 보고하라.

선장은 현재 상황을 안전관리담당자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선내 방송으로 승객에게 알린다.

상황진행 : 선장은 다음 사항을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계기관에 보고한다.

1) 충돌일시, 장소

2) 충돌의 원인 및 충돌시 상황 (속도, 침로, 상호관계)

3) 인명, 선체의 손상 여부

4) 엔진 사용가능여부

5) 유출유 유무 및 구조 필요여부

6) 응급처치와 이후의 방침

7) 상대선 국적, 선명, 손상정도

8) 충돌 후 현재까지의 상황

선내 방송으로 승객에게 충돌상황을 알리고 동요하지 않도록 안심시킨다.

선 장 : 현장-브릿지, 상대 선박이 자력으로 가까운 울릉도까지 운항 가능한지 확인 바란다.

1항사 : 상대선은 자력으로 울릉도까지 운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출발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본선 파공 부위는 수선상부입니다. 응급복구 완료하였으며 Void 탱크 내 침수는 펌프를 이용하여 배출하였습니다.

선 장 : 상황을 종료하고 자세한 내용은 회사 및 관계기관에 연락한다.

1 항사 : 수밀문 폐쇄하고 퇴각하였습니다. 항해해도 좋겠습니다.

선 장 : 비상부서 배치 해제

훈련종료

6) 좌초사고 훈련 시나리오

상황진행 : __월 __일 독도접안 중 돌풍으로 인하여 좌초 사고 발생.
독도에 접안 후 승객들을 하선 시키고 비상부서배치를 발령한다.

선 장 : 좌초사고 비상신호 * * * * * ----- (단음7회 장음1회)
훈련 좌초사고 발생 좌초 부서배치 훈련(2회반복)

1항사 : 좌초사고 부서 4명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 후 보고하겠습니다.

(잠시후) 본선 좌현 FORE PEAK 탱크 바닥에 약 30cm 크랙이 발생하였습니다.
탱크 내 바닥에 약 20cm의 해수가 침수되었으며 조금씩 새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으며 모포 및 썰기로 임시조치 가능하겠습니다.

선 장 : 현장-브릿지, 크랙 부위 임시복구 조치하고 상황 보고한다.

상황진행 : 선장은 회사에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독도드림 선장입니다. 독도접안 중 돌풍에 밀려 좌초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승객은 다치신 분 없이 150명 전원 독도에 전원 하선을 하였고 조사결과 FORE PEAK 탱크 바닥에 약 30cm 크랙이 발생하였습니다.

탱크 내 바닥에 약 20cm의 해수가 침수되었으며 조금씩 새어 들어오고 있지만 본선자체 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승객분들은 타 선박으로 울릉도까지 모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며 본선이 울릉도까지 운항 중 만일을 위해서 해경 구조선에게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책임자 : 예, 모든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울릉도까지 운항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사 : FORE PEAK 탱크 바닥에 발생한 크랙은 임시조치하고 침수된 해수는 배출완료 하였습니다. 울릉도까지 자력으로 운항 가능하겠습니다.

선 장 : 알았다. 감시요원 배치하여 수시로 점검하라

1항사 : 알겠습니다. 감시요원 배치하고 해산하겠습니다.

상황진행 : 선장은 회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수리 및 검사절차를 의논한다.

선 장 : 비상부서 배치 해제

훈련종료

7) 추진기관 고장 훈련 시나리오

상황진행 : 독도를 출항하여 울릉도로 항해중 울릉도에서 약 9마일 해상에서 우현 엔진의 이상을 발견 선장에게 보고한다.

2기사 : 선장님 우현 엔진이 정지 되었습니다.

선 장 : 기관장 기관실로 가서 확인하라.

기관장 : 예, 기관실에서 우현 엔진 점검하겠습니다.

기관장 : 브릿지 기관실 현장에 도착하여 확인 결과 운항중 본선 수리가 불가합니다.

선 장 : 주기관 사고 비상신호 * * * * * ---- (단음7회 장음1회)

주기관사고 비상부서 배치 훈련 (2회반복)

선 장 : 기관실 기관장은 우현 엔진 외에 좌현 엔진 상태를 자주 관찰하여 안전항해에 최선을 다하라.

기관장 : 알겠습니다.

선 장 : 알겠다.

선장은 현 상황을 선내방송 하고 본선 주위 선박들의 동정과 수심 등의 위험요소들을 파악하고 조종부자유선의 형상물(흑구 2개)을 게양한다.

선 장 : 1항사는 만일을 위해서 비상투묘 준비하라.

1항사 : 브릿지 선수 알겠습니다. 비상투묘 준비 및 투묘요원 배치하겠습니다.

승객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선 엔진 2대중 우현 엔진의 고장으로 감속하여 운항중이며 모든 관계 기관에 연락도 취하고 있으며 긴급상황 발생시 협조도 부탁하고 있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 : 좌현엔진 정상 작동하며 울릉도까지 항해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선 장 : 알겠다. 선장은 회사와 운항관리실 및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접근하는 타선박들이 있으면 통신 및 경보신호 송신한다.

1항사 : 브릿지 선수 비상투묘준비 및 투묘요원 배치되었습니다.

선 장 : 알겠다

운항관리실 여기는 독도드림 본선은 독도에서 울릉도로 항해중 위도 N, 경도 E에서 우현 엔진 고장으로 감속으로 운항 있습니다. 만일을 위해서 해경 구조선과 예인선 요청하니 조치 부탁드립니다.

상황진행 : 좌현 엔진으로 감속 운항하여 최소속도 유지하며 예인선과 좌현 엔진을 사용하여 울릉도에 접안한다.

선 장 : 비상부서 배치 해제

훈련종료

8) 밀폐구역 훈련 시나리오

상황진행 : 갑판장이 VOID SPACE 점검 중, 유독가스 마시고 쓰러진다.
ACCESS HATCH에서 대기 중이던 1항사는 즉시 선교에 보고한다.

1항사 : 선장님! 선수객실 STBD FWD VOID TANK 점검중이던 갑판장이 쓰러졌습니다.

선 장 : 밀폐구역 비상신호 * * * * * ---- (단음7회 장음1회)
훈련 STBD FWD VOID TANK 의식불명자 발생.
밀폐구역진입 및 구조 부서배치 훈련 (2회반복)

상황진행 : 1항사 산소농도 측정기를 조타실에서 가져간다.

선 장 : 산소농도 측정기로 산소 농도를 측정하라

1항사 : 산소농도 측정기로 산소 농도를 측정결과 정상수치입니다

선 장 : 현장 투입하라.

1항사 : 1기사, 2기사 현장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상황진행 : 선장은 본사, 해경에 무선 보고한다.

진입조(1기사, 2기사)는 VOID TANK 진입후 갑판장을 메고 나온다.

1항사 : 선장님 진입조 갑판장 구출 완료했습니다.

선 장 : 알겠다.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선수 갑판으로 갑판장 옮겨라.
육상에 연락취했으니, 의료진에 인계하라.

선 장 : 비상부서 배치 해제

훈련종료

9) 악천후 대비 훈련 시나리오

상황진행 : 독도에서 울릉도로 항해 중 너울성 파도로 인하여 선수 우현 첫 번째 유리창이 객실로 밀려들어 오면서 틈이 생긴.

갑판장 : 선장님! 선수 우현 첫 번째 유리창이 객실로 밀려들어 오면서 틈이 생겨 바람과 해수가 객실 안으로 날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객분중에 다치신 분이 없습니다.

선 장 : 악천후 대비 비상신호 * * * * * ----- (단음7회 장음1회)

선수 우현 유리창손상 악천후 대비 부서배치 훈련 (2회반복)

선 장 : 기관장 엔진정지. 선장은 객실에 안내방송하고 관계기관에 보고한다.

기관장 : 엔진 정지하였습니다.

승객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너울성파도로 인하여 선수 우현 첫 번째 유리창이 객실로 밀려들어오면서 틈이 발생하여 승무원들이 조치중에 있습니다. 승객여러분께서는 선수쪽에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항사 : 현장요원 4명 집합완료했습니다.

비상용 나무판으로 임시조치 하겠습니다.

선미풍향으로 조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장 : 알았다.

선미풍향으로 조선하고 있으니 비상조치 바란다.

수고하십니다. 여기는 여객선 독도드림입니다.

선수 우현 첫 번째 유리창이 객실로 밀려들어오면서 틈이 생겨 바람과 해수가 객실 안으로 날려 들어오고 있어서 비상용 나무판으로 조치하고 있으며 만일을 위해서 해경 구조선을 파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상은 북동풍 8-10m/s 너울성파고 2M입니다.

1항사 : 브릿지-현장 비상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선 장 : 알았다. 승객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좌석을 재배치를 하고 감시자 1명 입항시까지 현장에 배치하라.

1항사 : 승객분들 사고현장으로부터 피해가 가지 않도록 2층과 1층 선미쪽으로 좌석재배치하고 갑판장 현장에 배치하겠습니다.

선 장 : 승객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승객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입니다.

본선 선수 유리창 손상은 임시조치 하였습니다.

승객여러분께서 현장부근 접근을 삼가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감속운항 중에 있으며 만일을 위해 해경 구조선이 오고 있으니 승객여러분께서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 장 : 비상부서 배치 해제

훈련종료

[붙임 12] 여객선 장비 및 시설현황

구분	연번	장비·시설	수량	설치장소
항해	1	레이더(JMA-5332)	2	브릿지
	2	VDR(항해기록장치)	1	브릿지
	3	AIS(선박자동식별장치 JHS-182)	1	브릿지
기관	1	주기관(MTU 16V4000 M63L)	2	기관실
	2	발전기(Caterpillar C4.4dit)	2	기관실
통신	1	SSB(SAILOR 6300)	1	브릿지
	2	VHF(SAILOR 6222)	2	브릿지
구명	1	구명뗏목(150인승)	4	선수양현, 선미양현
	2	구조정	1	1층 선미
	3	구명부환(구명줄붙이)	5	1층 비상탈출구 2층 선미갑판
	4	구명부환(등붙이)	3	선수(2) 선미갑판(1)
	5	구명부환(등 및 자기발연신호 붙이)	2	좌·우현 선교데크
	6	구명조끼	473	객실
	7	어린이용 구명조끼	45	객실
	8	유아용 구명조끼	12	객실
	9	강하식 탑승장치	4	1층 좌·우현 현문 선미 보관함
	10	레이더 트랜스폰더	2	브릿지
	11	로켓낙하산신호	4	브릿지
	12	구명색발사포	4	브릿지
	13	쌍방향 VHF 무선전화기	3	브릿지
	14	(위성) 비상 위치 무선 표시 장치	2	브릿지
	15	방수복	5	선미창고
소화	1	소화전	8	선내
	2	소화기 (5KG CO2)	3	기관실 좌·우현 브릿지
	3	소화기 (6.8KG CO2)	6	기관실
	4	소화기 (9L FOAM)	2	기관실 좌·우현
	5	소화기(9KG POWDER)	4	1층 좌·우현 선미 기관실 좌·우현
	6	소화기(9KG WATER)	4	1층 객실(2) 2층 객실(2)
	7	고정식 CO2 소화설비	1	1층 선미
	8	소방원장구	2	선수(1) 선미(1)

[붙임 13] 선박 문서 보존연한

분류	관련 문서
영구 보존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증서 ○ 효력이 영속하는 각종 증서 ○ 운항관리규정 관계 ○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 ○ 해양사고/준사고 보고서 ○ 기타 선박운항과 관련한 기록으로 영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중요기록
5년 보존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심사 및 부적합사항 관계 ○ 선박검사 관계 ○ 선박점검 관계 ○ 해양오염방지 관계 ○ 선내비상훈련에 관한 기록 ○ 선원교육 관계 ○ 해사정보(사고속보, 항행정보, 기관정보, 항만정보) ○ 외부기관 점검 관련 기록
3년 보존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관리 관계 ○ 선원자격 관계 ○ 선원교육 관계 ○ 문서접수 대장 ○ 기름 및 폐기물기록부
1년 보존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행통보 ○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
6개월 보존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기록 ○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을 위한 기록

[붙임 14] 문서관리대장

도면 및 서류

연번	문서명	보존년한	관리자
1	운항관리규정	영구	선장
2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영구	선장
3	복원성 자료	영구	선장
4	출항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1년	선장
5	항해일지	영구	선장
6	기관일지	영구	기관장
7	승무원 명부	영구	선장
8	해기사 면허증	영구	선장
9	선원수첩	영구	선장
10	선박관련 도면(일반배치도 외)	영구	선장
11	문서접수 대장	3년	선장
12	기름 및 폐기물기록부	3년	선장

증서목록 (유효기간이 있는 증서는 그 기간을 보관)

연번	문서 (명)	보존기간	관리자	
1	선박국적증서	영구	선장	
2	한국선급증서	5년	선장	
3	선박검사증서	5년	선장	
4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5년	선장	
5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	영구	선장	
6	승무정원증서	영구	선장	
7	무선국 허가증	영구	선장	
8	무선검사증	1년	선장	
9	보험가입증서	선박공제증권	영구	선장/본사
		선주배상책임공제증권		
		선원·여객·임금채권공제증권		
10	해양오염방지 관리인 임명장	영구	선장	
11	응급처치 담당자 임명장	영구	선장	
12	위험물 운송 허가증	영구	선장	

[붙임 15] 내부심사 절차서

1. 심사 구분

- 가. 정기내부심사 : 연1회 이상 선박/안전관리부서에 정기적으로 실시
- 나. 특별내부심사 : 특정사유 발생시 최고경영자 승인을 얻어 특정선박 또는 특정부서를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실시

2. 내부심사 주요 내용

- 가. 회사 안전 목표/방침 이해 여부
- 나.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적합성 및 상호 모순성 여부
- 다. 문서 및 기록유지 관리상태, 부적합사항 등 시정조치 이행여부
- 라. 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

3. 내부심사자 자격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당사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직급이 과장 이상인 자
- 나. 선박안전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다.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4. 내부심사 계획 및 준비 절차

가. 내부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

- 1) 안전관리책임자는 당해연도 내부심사 실시 1개월 전 내부심사 계획을 수립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심사대상에게 심사 실시 10일전까지 통보한다.
- 2) 내부심사 계획서에는 심사목적, 심사종류, 심사대상 심사범위, 심사일정, 심사(심사원) 구성, 내부심사 점검표 기타 참고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나. 심사수행

1) 시작회의

심사팀장은 심사 시작 전 심사자, 피심사자를 참석시켜 아래 사항을 협의한다.

- 심사의 목적 및 범위, 심사방법, 심사자 소개 심사절차 및 일정
- 이전심사의 미결사항, 피심사부서 심사 담당자 등 기타 필요한 사항

2) 심사수행

- 심사자는 내부심사 점검표 및 내부심사 주요내용에 대하여 내부심사를 수행한다.
- 심사대상 또는 선박의 업무진행에는 최소의 영향을 주도록 심사한다.

-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피심사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받고 피심사부서 담당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 반영한다.
- 피심사부서장 또는 선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 및 조치기한을 심사팀장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3) 종료회의

심사팀장은 피심사부서 해당직원을 참석시켜 아래의 심사결과를 설명 협의한다.

- 심사결과의 종합평가, 부적합사항 또는 권고사항 확인 및 설명
-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절차 및 조치시한 확인 및 필요시 재조정
- 운항관리규정 개선에 필요한 기타 필요한 사항

5. 심사결과

가. 결과보고 절차

안전관리책임자는 내부심사 점검표를 작성 그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나.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

- 1) 해당부서에서는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합의된 기한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한 후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 2) 안전관리책임자는 시정조치결과보고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직접 확인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승인을 득한 후 부적합보고서를 해제한다.

6. 최고경영자는 내부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의 문서화된 운항관리규정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년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붙임 16] 내부심사 점검표 및 보고서

내부심사 부적합사항 보고서		부적합번호 (부)	
		발행일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내부심사 <input type="checkbox"/> 고객불만사항 <input type="checkbox"/> 자체발행		대상부서	
※ 부적합사항 1. 관련문서(근거) 2. 부적합내용 :		<input type="checkbox"/> 중부적합 <input type="checkbox"/> 경부적합 <input type="checkbox"/> 권고사항	
해당부서장 :	심사자(발행자) :	심시팀장 :	
※ 부적합사항 검토 및 시정조치 방안		조치기한	
시정조치부서	검토(심사)일	검토(심사)자	
※ 시정조치내용	시정조치일자	시정조치부서장	
※ 시정조치확인결과		<input type="checkbox"/> 종결승인 <input type="checkbox"/> 재조치 <input type="checkbox"/> 조건부승인	
▶ 시정조치 재시행시 신규번호:(부) - - - 일련번호부여			
확인일자		확인(승인)자	재조치기한 _____
※ 유효성/효과 검토 결과		종결일자:	최종확인자:

내부심사점검표			심사대상		
			심사종류	년도(■정기 □특별)	
심사목적		심사기간			
운항관리규정 항목	부적합	권고	심사자 명단 및 심사일정		
1.안전관리 목표 및 방침			책임심사자 :		
2.안전관리 조직					
3.출항 또는 운항정지 조건					
4.운항기준도					
5.선장의 보고사항			일반심사자		
6.위험물 취급					
7.여객 승하선 및 화물 적재					
8.선박 및 수송시설의 점검정비					
9.해양사고등 사고발생시 조치			부적합(총 0 건)		
10.여객준수사항의 전달			구 분	중부적합(○)	건
11.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 교육				경부적합(△)	건
12.문서 및 자료관리				권고사항	건
13.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원 인 별 분 석	절차내용 미흡	건
14.내부심사				절차 불이행	건
15.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평가				업무이해 미흡	건
합 계				시정조치 미흡	건
				증거(기록)미흡	건
			지원 미흡	건	
심사결과 요약 및 분석					
유첨	1.부적합사항 보고서 부				
작성일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주) 작성 → 책임심사자, 검토자 → 안전관리책임자, 확인자 → 사장					

[붙임 17] 안전관리 조직도

